2020학년도
School Safety Plan for 2020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2020. 1.

대 성 초 등 학 교

목 차

Ⅰ. 개요

1. 학교계획
2. 학교계획 추진현황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4. 안전 관련 업무

Ⅱ.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2.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3. 학교 시설 안전 점검 · 관리 · 조치
4. 학교 안전 문화 확산
5. 안전사고 피해회복

〔붙임〕

1. 학교 비상연락망
2.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3.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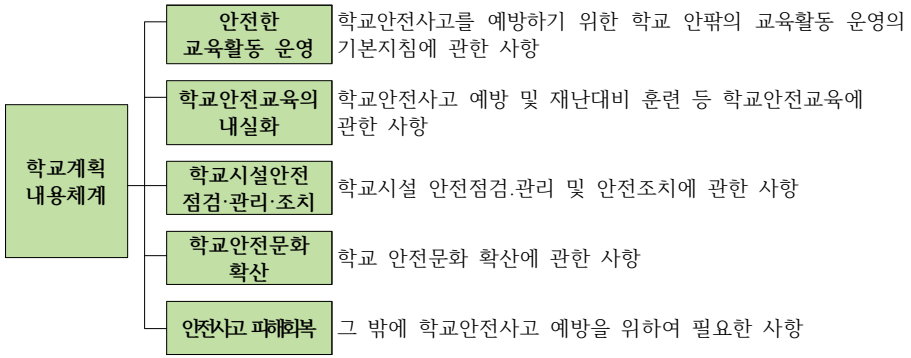
Ⅰ. 개요

1. 학교계획

가. 학교계획의 목표

○ 실효성 있는 학교계획의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학교 안전관리 체계 및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교 안전 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

나. 학교계획의 내용체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세부집행계획 수립), 동법 시행령 제28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7조(교육안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2. 학교계획 추진현황

가. 학교안전교육 추진 실적

1)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기준 : 2019년)

연도 \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18.3. ~ 2021.2	2018	10	13	23	4	0	4	17%
	2019	12	11	23	4	4	8	34%
	2020							

2)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기준 : 2019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94	12	11	23	82	12	11	23	100	100

3)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 (기준 : 2019년)

안전영역 필수이수시간 / 학년별 평균 이수시간	생활 안전 (12)	교통 안전 (11)	폭력 및 신변보호 (8)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10)	재난 안전 (6)	직업 안전 (2)	응급 처치 (2)	계(51)
초등학교 시간(차수)	15.5	11.3	15.8	13.5	7.6	2.5	3.3	69.5
유치원 시간(차수)	19	10	8	10	6	2	2	57

나.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 해당칸에 ✓를 표시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정문)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훈련중심의 대피훈련 실시 · 불시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응능력 훈련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실시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		✓			
	외부체험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 <별첨5>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 <별첨3>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3. 학교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			·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학교안전 점검의 날'운영(매월 4일)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		✓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		✓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			· 자체 및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계획하는 대피로, 캠페인 등 실시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		✓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학교생활 속에 스며드는 안전문화 조성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			
5. 학교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		✓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		✓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			
6. 기타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			

주) 1. 계획 수립 : ○ - 반영, × - 미반영
2. 전년도 실적 : ○ - 잘 추진했음, △ - 보통이다. × - 보통이하로 추진
3. 기본계획 각 호별로 전년도 해당학교의 주요 학교안전 추진 실적을 기재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가. 학교 현황

1) 일반현황

학교명	대성초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12457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75(대성리 399-16)					
전 화		FAX		홈페이지	www.kgds.es.kr	
교 장		학교안전 책임관		행정실장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2020년 3월 기준)

학생 (명)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합계
	15	16	11	17	16	13	9	(3)	97

교직원 (명)	교원	행정직원	계약제교직원	교육공무직원	기타	합계
	11	4	5	3	4	27

3) 학교 비상연락망 : [붙임1]

4)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붙임2]

나. 학교 안전 조직

1) 안전관리추진 조직

가) 평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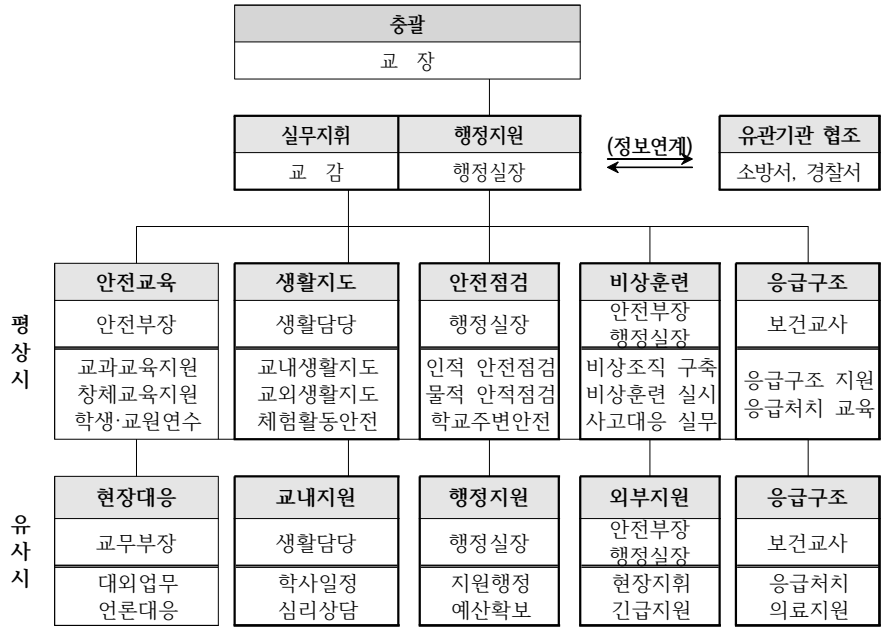
○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는 학교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시켜 조직을 구성하며,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 업무를 분담한다.

나) 유사시

"사고대응 일이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등은 가장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님, 혹은 관리자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속성을 지니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다) 유사시 상황반 근무 편성

(1) 편성 현황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상황실장	교장	교장	교장	교장	교장
상황반장	교감	교감	교감	교감	교감
상황팀장	교무	교무	교무	교무	교무
상 황 반	유치원교사, 각반담임	유치원교사, 각반담임	유치원교사, 각반담임	유치원교사, 각반담임	유치원교사, 각반담임
복구지원반	행정실	행정실	행정실	행정실	행정실
사고처리반	생활담당 ,보건	생활담당 ,보건	생활담당 ,보건	생활담당 ,보건	생활담당 ,보건
홍보지원반	실무사	실무사	실무사	실무사	실무사

(2) 상황반 임무

- 주요 훈련상황 분석, 조치, 보고 및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후 보고
- 부서별 상황접수, 처리, 보고 및 조치내용 기록
-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관리, 상황실 관리 유지 및 근무요원 통제

라)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1) 학교장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사고지휘관 (교감/행정실장, 학교안전책임관)

사고지휘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한다.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한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교사

교사는 학생지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학생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를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한다.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 지시.
○ 학생들을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학생의 인원 확인.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부상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4) 보조교사: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보건교사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한다.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6) 기능직원(건물관리 용역업체 직원 포함)/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한다.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벨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한다.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사무직원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한다.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한다.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한다.

(8) 급식/식당 서비스 담당자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9) 강사 등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요청에 따른 보고와 지시사항을 실행한다.

(10) 학생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아래의 행동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학생들은 이를 실행해야 한다.

- ◦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는다.
-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역량을 개발한다.
-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11) 학부모/보호자

- ◦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한다.
-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한다.
- ◦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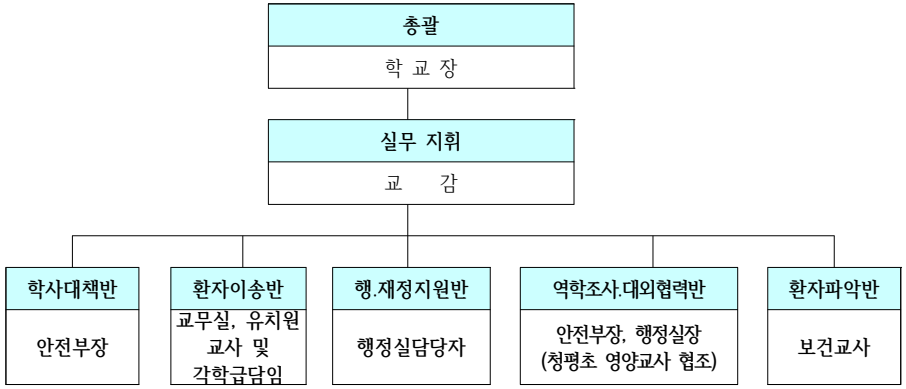
마) 비상 경보 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시 수단	비고
접수 (외부)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유선	가두 방송	가평군 청평면 주민센터
전파 (내부)	학교 내 방송	음성 방송, 타종, 호루라기	타종,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상황	담당	커뮤니케이션 방법	비 고
비상벨 정상 작동 시설 유지 및 관리	행정실	○ 오작동으로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 오작동 및 안전 관련 상황이 아닌 상태로 경보가 울렸을 때 확인 및 조치	
비상벨 경보 시	안전부장	○ 비상벨 작동 원인 및 장소 파악 및 현재 상황 보고 및 대처 (통보순서: 학생부장→교감→119 및 관할소방서, 각부서장 및 담임)	
	초기상황 발견자	○ 최초의 화재목격자가 큰소리로 화재사실을 알리고, 교무실에 통보.	
	방송 담당교사	○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차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 제반 상황 준비	
	안전부장	○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차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명령 지휘 및 실시합니다. (안전 대피 훈련과 동일하게 대응함)	

2)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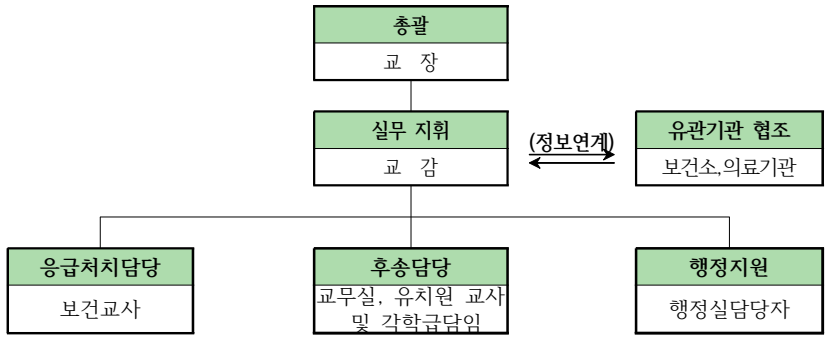
○ 학교 식중독 대책반의 주요 임무는 학교식중독 발생 시 학사대책 수립, 환자이송, 행·재정지원, 역학조사·대외협력, 환자파악으로 구분하여 신속하게 식중독의 원인과 식중독 현황을 파악한다.



3) 응급구조체계 조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 응급처치담당, 후송담당, 행정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 등으로 조직을 편성한다.



4)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요물품 공급업체 비상연락망

※ 보안, 전력, 가스. 승강기 등 비상시 연락이 필요한 업체

구분	업체명	연락처		비고
		사무실	H/P	
보안				
전기				
가스				
승강기				

5)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등 교직원의 위기 대응 전문 기술 보유 현황

※ 응급처치(간호사), 위험물취급, 소방안전, 전기안전, 카운슬러/정신건강 등 교직원 중 자격이나 기술보유자 등

구분	이름	연락처	비고(자격유효기간 등)
응급처치(간호사)			간호사
심폐소생술(CPR)			
위험물취급			
소방안전			방화관리자
전기안전			외부업체
카운슬러/정신건강			정신건강강사

※ 보건교사1명

전체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2018년 교육이수증 취득)

자동제세동기 학교내(보건실 내 보이는곳, 안내표지판 부착)에 비치되어 있음

학생 전교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6) 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포함) 배치 및 활동 현황 등

구분	이름(단체명)	연락처(대표자명)	비고(활동내역)
배움터지킴이			08:00~09:00 14:50~16:45 정문 교통지도
야간당직근무			

- 학생보호인력 역할

가.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에 학교 내외 순시.순찰

나. 학교장이 주관하는 학교주변 정화, 취약지역 순회지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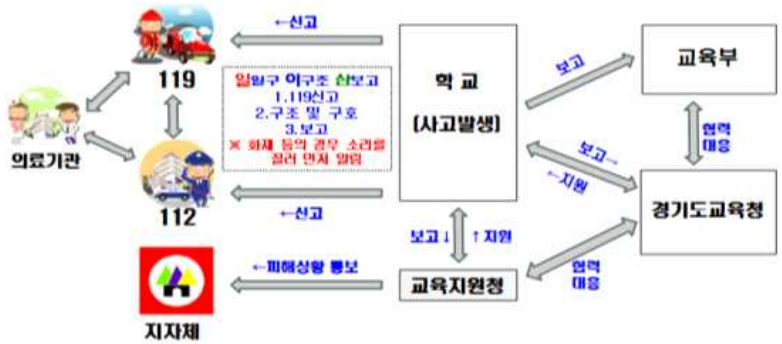
다. 교사와 연계한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보호활동을 한다.

라. 학교장, 지도교사, 학부모 등의 요구에 따른 상담 및 예방교육을 한다.

영역	시간	하실 일	장소	비고
등교 및 교통지도	08:00 -09:00	- 학생등교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	
하교안전 지도	14:50 -16:45	- 하교학생 안전 및 기본생활지도	정문 및 후문	
일과종료	16:45-	- 일지 작성 및 귀가		

7) 유관기관 협조체계

❍ 학교안전은 학교 이외의 유관기관, 지역사회, 학부모의 협조.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함으로서 사고 시 신속한 업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전 기관 협력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력 강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학교와 학생 관련 119 신고 접수 시 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는 협력 체계 구축

❍ 학교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119신고(필요 시 112 신고)와 긴급구조.구호를 실시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 동시 보고**

❍ 보고대상: 교육부 재난.안전사고 보고 대상을 참고하여 안전사고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 '외부인 침입에 의한 범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보고

❍ 최초 보고 이후 사안보고서 제출 시 **교육부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부(moe119@moe.go.kr)로 동시 제출**

교육부 재난·안전사고 보고 대상

-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기관	이름	연락처
국가재난정보센터	자연피해신고 문의	02-2100-0769
국가재난정보센터	특정관리대상시설 문의	02-2100-0494
병원	원병원	031-590-3114
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	031-581-4350~2, 584-5113
소방서	가평소방서	031-581-1119
	청평 119 안전센터	031-580-0560
경찰서	가평경찰서	031-582-1321
	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031-584-0112

도교육청 주요 사안별 담당부서

사 안 명	전화번호 (주간)	주관부서	협조부서
급식, 식중독 사고	031-249-0451~5	교육급식과	
건강, 보건, 환경, 위생, 감염병	031-249-0593~7	체육건강교육과	
체육교육, 학교운동부 사고	031-249-0292~3		
과학실 실험·실습실 사고	031-820-0593~5	특성화교육과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사고	031-820-0615~6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중 사고	031-820-0791~3	학생안전과	
학교폭력·성폭력	031-820-0766~8		
수상활동(물놀이) 중 안전사고	031-820-0754~5		
외부인 침입에 의한 범죄	031-820-0754~5	학생안전과	직종별 인사담당
자살,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031-249-0862~7	학생위기지원단	
유괴·실종 사고 교통 및 통학 중 안전사고 (유치원) (특수학교)	031-820-0713 031-820-0754~5 031-249-0261~4 031-249-0277~0280	학생안전과 학생안전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사 안 명	전화번호 (주간)	주관부서	협조부서
감염병(유치원)	031-249-0261~4	유아교육과	
아동학대(유치원)	031-249-0261~4		
특수학교 안전사고	031-249-0277~0280 031-820-0754~5	특수교육과 학생안전과	
유치원 안전사고	031-249-0261~4 031-820-0754~5	유아교육과 학생안전과	
교원에 의한 학교성폭력	031-249-0231	교원정책과	
자연재난, 화재, 폭발, 승강기	031-820-0727~9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과
교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031-820-0772~5	안전관리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안전사고	031-820-0686~9	문예교육과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	031-820-0542~6	평생교육과	
국지도발 및 테러에 의한 피해	031-820-0699,0700	안전정책과	

◈ 사안을 접수한 주관부서에서 대응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부서를 협조 부서로 지정하는 경우 **협조 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의무적 협조**

※ 사안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야간 및 공휴일	☎ 031-820-0514 (0524)	FAX 031-821-1023

4. 안전 관련 업무

○ 학교안전 관련 업무는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교원과 직원이 협력하여 추진
○ 학교장은 학교실정, 교직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부서 등 지정
○ 업무 분장 시 부서간, 교직원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지정

☑ 교장 :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 총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속한 업무조정, 업무분장 등
☑ 학교안전책임관(교감) : 학생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교원 안전 역량 함양에 대한 교육 실시(기간제 교사 포함),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등
☑ 행정실(행정실장) : 학교의 시설·소방분야 안전, 교육공무직원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리
☑ 안전담당 : 교무·학사 부분의 부서별로 분산하여 분장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기능을 일원화

Ⅱ.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가. 교육활동 안전 대책

1)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 계획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비상훈련	시설관리
	교내	교외			
3월	입학식, 개학식 학교안전계획 작성	교외생활지도 계획 수립	학교 교내생활 안전교육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민방공훈련 (학기당 1회)	매월 안전점검의 날
4월	과학의날 소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산내들)	화재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합동소방훈련 황사·미세먼지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5월		현장체험학습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재난 안전교육	을지태극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원격연수
6월		진로체험박람회 야영활동 3,4 생존수영	교통안전교육 수상 안전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전달연수
7월	여름방학		폭염 관련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8월	개학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9월		야외활동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버스사고 대응 훈련, 민방공훈련(학기당 1회)	매월 안전점검의 날
10월		현장체험학습	등산 및 야외활동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11월	학교안전자체진단 (10~12) 학예회		화재 예방 지도 강화	실험·실습안전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12월		현장체험학습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1월	겨울방학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교육 졸업식 전후 교내·외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2월	졸업 및 봄방학				매월 안전점검의 날

2) 학생 생활 안전 지도

가) 교내안전

(1) 수업시간

수업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준비 및 지도사항과 학생들이 준수해야할 안전수칙을 정리하였다.

(가) 과학시간

화학약품, 위험물질 사용에 대한 취급방법과 안전수칙과 알콜램프 등 가열기구 이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토록 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과학담당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실험용기, 시약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둔다. 실험실습 전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해 놓는다. 독성이 있거나 냄새가 좋지 않은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후드가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후드가 없을 때는 창문을 열어놓는다.

② 학생 안전수칙

<시약류 취급>

실험실 기기의 작업 및 조작은 지정된 순서를 정확히 따라서 하고, 취급할 약품의 사용법과 예방책을 교사가 설명할 때까지 약품에 손대지 않는다. 약품을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보관하고 남은 것을 다시 시약병에 넣지 않는다. 다만 많은 양을 사용하는 아세톤, 에탄올,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용액, 과산화수소 용액 등은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가연성 물질을 다룰 때는 화기를 주변에 놓지 않는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 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시험관에 화학물질을 가열할 때는 마개를 열고 입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시약을 덜어낼 때는 시약의 이름을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필요한 양 만큼 덜어낸다.

지시가 없는 한, 약품의 맛을 보아서는 안 되고, 냄새를 알고자 할 때는 얼굴을 향하여 손으로 부채질하면서 냄새를 맡아야 한다. 강산이나 강염기를 희석시킬 때는 반드시 물을 먼저 붓고 산이나 염기를 조금씩 부어가며 희석시킨다. 시약병을 실험실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유독휘발성 액체시약은 스포이트로 옮긴다.

<가열기구 실험>

물질이 휘발성일 때는 마개를 단단히 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놓아둔다. 인화성이 큰 물질은 불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알코올램프 안의 알코올의 양은 30~80% 정도로 담아 쓰고, 알코올램프 불을 기울여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알코올 램프는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뚜껑을 옆에서 살며시 덮어 끈다. 잠시 후 뚜껑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잘 덮는다.

(나) 체육시간

체육수업 전에 미리 파악하고 조치할 사항과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일을 숙지하여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요양호자, 신체허약자, 심장질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수업 전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한다. 정확한 운동방법과 주의사항을 완전히 숙지시킨 후 운동을 실시하고, 단계별, 수준별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운동 중에는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뿐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의 행동도 수시로 관찰한다. 경쟁이 과열되면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통제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체육시간에 몸이 아프면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쉰다. 개인 운동기구는 반드시 한 사람씩 이용토록 하고 체육기구 운반은 여러 학생들이 협동하여 조심스럽게 한다.
다른 친구들의 활동 모습과 내용을 열심히 보고 익히며, 경기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다) 미술시간

미술시간 중 안전사고는 미술도구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도구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도하고 도구의 사용이 서툴거나 실수가 많은 학생을 파악하여 따로 지도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조각칼은 칼이 지나가는 방향에는 몸이나 손을 놓지 않도록 하고, 커터 칼의 경우 너무 길게 빼서 사용하지 않고 손은 칼이 지나가는 부분에 놓지 않도록 하며, 사용 후에는 칼날을 넣는다.
글루건은 노즐이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달구어진 접착액은 온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니퍼, 펜치, 가위는 물건이 물리는 부위에 실수로 손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실습시간

가열 또는 전열기구, 칼 또는 날카로운 기구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도하고 중요한 내용은 써서 보기 좋은 위치에 부착해 놓고, 준비된 식품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가스 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냄새)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칼날이 무뎌지면 힘을 주게 되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적당하게 갈아졌는지 미리 확인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가열기구 다루기>

가스기구의 불을 켜는 순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며, 가스기구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가까이에 놓지 않는다. 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 스위치는 물론 중간밸브도 잠근다.
조리 시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지켜본다. 냄비를 가열 할 때, 냄비 뚜껑 및 손잡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엌칼, 과일칼 다루기>

재료를 썰 때는 재료를 잡고 있는 손을 칼의 뒤쪽에 놓아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칼날은 아래쪽을 향하게 한다.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대 칼을 들고 장난하지 않는다.

(2) 휴식시간

쉬는 시간은 교사의 임장이 약해지는 반면 학생들은 긴장이 완화되면서 신체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이므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물 점검과 확인 및 학생들의 생활태도 등에 대한 교육방법 등을 숙지한다.

(가) 교실, 복도, 계단, 난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실, 복도, 계단, 난간에 대한 시설점검과 이용방법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 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계단 난간의 높이는 90cm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설치하고 높이가 3.7m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중간에 계단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cm이상 되도록 하고 불균형 계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복도와 계단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바닥이 물기 등의 액체 이물질로 젖어 있지 않은지 수시로 관찰하여 물기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토록 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반드시 우측통행을 하고, 두 세 개의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고 계단 난간을 넘거나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앞사람과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공놀이나 술래잡기 놀이를 하지 않는다.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다치기 쉬우므로 조심한다.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는다.

(나) 유리창
유리창 파손 대비 및 파손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과 안전대 및 안전망을 설치한다. 유리창에는 칼라(백색)필름을 부착하고 깨지면 테이핑 처리한다. 깨진 유리 교체 및 청소는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하고, 깨진 유리조각이나 파편 청소 시 안전 장갑을 사용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창문 밖으로 물체를 던지는 위험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윗몸을 밖으로 내밀거나 또는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다) 책걸상
책걸상 사용방법과 파손 시 안전조치에 대해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또는 충격완화 고무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을 방지토록 한다. 책·걸상의 정기적 수리 및 교체, 안전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책걸상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책걸상에 걸터앉지 않고, 의자에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책걸상들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뛰지 않는다.

(라)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 이용 방법에 대해 안전지도를 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세균에 따라 일반적인 손 세척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세균도 있다. 따라서 위생적인 손 씻기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익히게 지도한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은 물기가 많은 곳이므로 이용에 항상 주의토로 하고, 수시로 바닥상

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면 세균, 먼지를 씻어내 주어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한 줄로 서서 이용한다. 화장실 사용 후에 물을 반드시 내린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바닥상태에 주의토록 하고, 세면대 위에 올라가서 발을 닦으면 세면대가 파손되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절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마) 승강기
승강기 안전진단과 올바른 탑승 지도를 실시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승강기 탑승 수칙을 지도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승강기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으며, 버튼이나 스위치를 장난으로 난폭하게 다루면 안 된다. 승강기 안에 쓰레기를 버리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승강기에 이상이 생기면 외부에 연락하고 승강기 안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승강기를 타거나 내릴 때 승강기가 정지하면 즉시 행동하지 않고 잠시 동안 내부나 외부를 살핀 후 행동한다. 화재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사용중지, 고장 또는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붙은 승강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점심시간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 식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평소에 예절교육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배식차 운반 요령 및 배식차를 여는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교사는 아동과 함께 급식준비에 참여한다. 배식 과정에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앞 사람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배식 시>
차례로 줄을 서서 서두르지 않고 배식을 받는다. 배식할 때는 장난을 치지 말고 차례를 기다린다. 식판을 옮길 때는 주변에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흐르게 되면 미끄러워져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며, 만약 음식물을 바닥에 흘렸을 경우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바로 휴지로 닦도록 한다.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에는 흘리거나 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알맞게 담도록 한다. 식판을 옮길 때에는 두 손으로 옮기도록 한다.

<급식도구 사용 시>
급식도구는 사용법에 맞게 바르게 사용한다. 젓가락으로 친구를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리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키고, 입에 음식물을 넣고 말하지 않는다.

(4) 방과 후
방과 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 후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소질 계발과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청소시간
문 열기-털기-닦기-정돈하기-문 닫기와 같은 청소 순서에 따른 안전한 청소 용구 사용 방법을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교실 출입문 등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의 사고를 예방한다. 교실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교실 내 액자나 선풍기 등 부착물의 낙하 방지를 점검한다.
교실청소 시 책상 및 양동이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시 가능한 2명 이상이 실시한다.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청소 순서에 따라 청소하고, 압정이나 본드로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의 먼지를 제거할 때 특히 주의한다. 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화장실 등의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청소 후에는 대걸레, 빗자루, 양동이 등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정리해서 보관한다.

(나) 놀이기구 이용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기구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 철봉대, 씨름장 등 각종 체육 시설의 안전성 확보

철봉대 평행봉 등의 적정 크기, 규격 등 구분 설치 및 용접부위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철봉대, 평행봉 주변(15cm이상)과 씨름장(20cm이상)은 미세모래사장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모래 턱은 고형물질(나무, 철 등) 사용을 금지한다. 뜀틀, 늑목놀이 시 주변에 매트리스 등을 필히 구비하여 충격을 완화하도록 한다. 축구, 핸드볼 골대 그물 등은 색상이 있는 그물을 설치하고 충격완화용 고무, 스펀지 등으로 안전보호대를 설치한다. 회전체 기구 주위에 사람 접근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 운동장의 청소 및 관리
운동장 주변 파손된 하수구, 맨홀, 웅덩이 등을 신속하게 개·보수하고 위험표지판 설치 등으로 추락을 방지한다. 운동장 주변 파손된 울타리, 벽 등은 개·보수 및 교체하고 안전 난간, 안전축대를 설치한다. 나뭇가지가 놀이시설 주변에 나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여 신체 특히 눈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놀이시설 안전 유무
기타 학교 및 놀이시설물 구조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담장에 5mm이상의 균열(Crack)이 발생했는지 경사의 기울기 등을 확인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여름철 너무 뜨겁거나 겨울철에 얼어 있을 때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않는다. 손에 물건을 들고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놀이기구에서 친구를 미는 등 위험한 놀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놀이기구 주변은 위험하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친구와 싸우지 않도록 하고, 흙이나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정해진 계단으로 순서를 지키며 차례대로 타고 내려오도록 하고,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계단을 타고 내려온 후에는 재빨리 비켜준다.
그네를 탈 때는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고, 친구가 타고 있는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배를 깔고 엎드려 타거나, 두 명이 한 그네에 타지 않도록 한다. 줄을 꼬지 않고 타야 하며, 그네에서 뛰어 내리지 않는다.
회전대가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면 관성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회전 중에는 같이 탑승한 사람과 밀고 당기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는다.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시키지 않도록 하고, 회전 중에 회전대를 멈추게 하려고 붙잡지 않는다. 회전대 밑으로 발이나 몸이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체육활동 시 수영장 안에서 뛰거나 친구를 밀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키보다 깊은 수심에서 수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 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강사는 현직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한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므로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관리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표2-1>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사항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학생안전 생활지도 계획 수립
○야간지도 책임자 임명
○비상연락망 구축학부모 알림체제 구축
○방과 후 학교 교실 순시
○등하교 관리
○차량이용자 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학교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안전관리계획

학교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방과 후 학교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계획은 학교안전계획과 연계하되 별도로 수립한다.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을 조정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지도 강사도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시 발생한 사고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일어난 사안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도 정규 교육 운영과 동일한 보상이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의한다.

-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
- 학생안전 생활지도 계획
-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야간 귀가지도 책임자
-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비상 연락망
- 청소년단체, 토요 스포츠클럽, 동아리활동 등 비상연락망

② 학생관리계획

㉮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안전 및 시설 관리 요령

수강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지각, 조퇴, 결석 등 학생 출결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림 수 있는 SMS 문자서비스 제공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는 방과 후 학교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귀가 후 교실 순시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수업시간 20분 전 입실하여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교실

사용 후 창문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전기 장치 및 냉난방기 확인 후 전원을 차단하여 책임 있는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관리 및 하교 지도

방과 후 학교 수업 후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 확인 후 하교 지도를 실시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생들에 교통규칙 준수 및 안전지도 후 교문 앞까지 동행하여 하교 지도한다.
학생 관리를 위한 상담은 필요 시 교내에서 실시하며, 학교장의 허락 없이 가정 방문 및 학교 밖에서의 학생 지도는 금지된다.

㉰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이동 시 학생 안전지도

학생 이동용 차량 운행 시 인솔자가 동승하여 지도한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학생들 차량 탑승 시 담당교사 또는 업무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학교간・학교급간 연계(공동) 활동 시 계약 차량의 운영이 가능하며, 차량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학생, 교직원, 강사 등 방과 후 학교 실시 직접 관계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약물 및 사이버 중독, 가출 등 고위험학생과 부모방치・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위기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 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외부인 출입 시 방문증 패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무단 외부인 식별, 신고, 단속 등 관리 요령을 숙지한다. 외부강사에게는 외부인과 구분하기 위한 외부강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식 또는 명찰을 착용토록 한다.

㉳ 기타

방과 후 학교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사안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구성하되, 학교보안관 또는 안전지킴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유사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유사 시 대처토록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당사자와 협의토록 한다.

나) 교외안전

(1) 학생안전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경로에는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통, 식품, 범죄, 환경 영역별로 학교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학교안전구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등.하교 안전지도 방향을 논의한다.

(가)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제12조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시행되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행되는 구역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100인 이상) 시설의 장이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학교 주출입구에서 300m범위 내 일정 도로구간에 지정, 500m까지 확장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도.차도를 구분하는 것과 함께 횡단보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및 과속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은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물리적 교통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차량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이면도로 일방통행 운영 등 교통흐름을 규제하고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교통속도 규제도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도 시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된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워킹스쿨버스, 교통사고 위험지도 제작 및 배포,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등이 있다.

(나) (식품안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내지 제7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지정하고 있다.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200m 범위 내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만족하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식품안전지킴이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모집하여 보호구역내의 위생지도.점검, 고열량.저영양식품/위해식품/정서저해식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 (범죄안전) 아동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은「아동복지법」제32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설의 장이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0m 범위 내에서 지정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을 시행하며 유괴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해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청원경찰, 민간경비(주간) 등이 있다.

(라) (환경 안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학교보건법」제5조에 근거하여 196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설정.고시한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은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된다.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 주변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 설치는「학교보건법」제6조에 따라 금지되나, 상대정화구역은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화구역 내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점검하며 금지시설 등이 있을 경우 조치 및 철거 요청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2-3> 학교 주변 안전구역 제도 종합비교

구분	교통	범죄	식품	환경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관계부처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근거법	도로교통법(12)	아동복지법(32)	어린이식생활 특별법(5)	학교보건법(5)
지정기준	학교주출입문 300~500m	학교경계 500m	학교경계 200m	(절대)학교출입문 50m (상대)학교경계 200m
지정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가, 지자체	시군구청장	교육감
지정대상	어.유.초.학원	어.유.초	초.중.고	유.초.중.고.대학
전담인력	공무원	아동안전 보호인력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공무원
시설설치	교통안전시설보도, 도로부속물	CCTV	표지판	표지판
행위등 제한	교통규제 주정차.통행금지	-	식품판매 제한	금지 행위.시설 심의해제

(2) 등.하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은 위험 요인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은 앞서 살펴 본 교통, 식품, 범죄, 환경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 주변의 4개 학교안전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한 후 학생들에게 학교안전구역별 위험 요인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위험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주변 안전맵 만들기를 해보거나, 학교에서 학교주변 안전맵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배포하여 학교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다.

(3) 놀이안전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야외 체험활동 증가 등의 정부시책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밖 스포츠 활동이 증가함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특징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민간인,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과의 충돌로 인한 골절, 뇌진탕 등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제3자 피해 보상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3자 피해는 교육활동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놀이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놀이활동에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있다. 놀이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 보호 장비를 미리 착용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

(가) 자전거, 인라인 등 이동기구 타기

이동수단만이 아닌 여가나 스포츠활동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른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2014년도 한해 동안 사망 289명, 부상 18,115건으로 심각한 실정이고, 고가의 자전거가 많아짐에 따라 물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이용의 편리함의 반대급부로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 공원, 놀이터,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 등의 안전한 장소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자전거를 탈태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해야 하며, 운전 중에는 과도한 핸들조작이나 과속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토록 함으로써 만일의 위험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놀이기구 역시 전용공간이나 놀이터, 학교 운동장 등 안전한 공간에서 타야 한다. 차가 다니는 도로나 주차장, 골목길, 공사장 부근이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은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이들 기구도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토록 지도하고 적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나) 물놀이 및 수상레포츠 안전

물놀이 안전은 야외 놀이활동 중 가장 주의를 요하는 영역이다. 물놀이 중 안전사고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물놀이 장소의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물놀이 활동 중에는 물놀이 장소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함께 학생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적정 수용인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움직임이 감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부적인 물놀이와 수상레포츠 안전수칙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매뉴얼을 참고할 것을 권장하고 여기서는 물놀이 안전 10대 수칙을 소개한다.

<표2-4> 물놀이 안전 10대 수칙

①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②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③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④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⑥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⑦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⑧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⑨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⑩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3) 외부 체험 활동 안전 대책

수학여행, 야외 체험학습, 자유학기제에 따른 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긴장이 이완되고, 교사의 임장 지도의 한계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학교 교내활동보다 증대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에는 철저한 사전 위험 점검과 교육을 통해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주의사항

(1) 계획 수립단계

관련 법규 및 교육부와 교육청 정책에 부합하도록 현장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학생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체험활동을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학생안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체험활동은 금지된다.

국외 여행 시 국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 불참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참 학생 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도한다.
현장체험학습을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할 경우 학교안전법 제8조의2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청소년활동 진흥법」제36조)을 실시하는지의 여부와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 의할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현장답사를 해야 한다. 계약 전과 체험학습 실시 전 2회의 현장답사를 실시하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학생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중·소규모는 인력확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2) 수련 및 숙박시설

식재료 구매, 조리, 배식 과정에서 위생관리와 식수 제공 시 끓인 물, 생수 등 검증된 식수 제공여부를 확인한다.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식단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한다.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함으로써 식중독 등 발생 시 역학조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숙박시설의 침대, 난간, 계단, 복도 등 시설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숙박시설의 베란다 및 창문을 넘나들 수 없게 조치했는지를 점검한다.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 일정을 통보해 위생·안전 점검을 요청하고 인근에 유해환경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출발 전 안전사고 예방조치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행렬에서 이탈해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마련한다.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학생들이 주류나 화기물질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를 조회 요청하고, 해당학교 관할 경찰서로는 학생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를 공문으로 요청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1) 교사

활동 전 과정에서 안전 및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수련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여부,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실시 전에 지참금지 물품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리고, 지참하지 않도록 특별지도를 실시한다.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

사와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지도교사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솔 및 지도교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인솔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한다. 인솔교사는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통안전지도, 수상안전지도, 화재예방지도, 위험시설 및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지도, 질병예방지도, 성폭행.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지도, 소지금지 물품 휴대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한다.

(2)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하며, 인솔 교사와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교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다중 이용 시설(숙소, 식당, 버스터미널, 지하철, 공항 등)에서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인솔지도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기내반입 금지물품(문구용 칼, 가위, 폭발성 물질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4) 안전약자(요양호자) 안전지도

(1) 요보호학생의 개념

요보호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달리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 학생들은 선.후천적인 지병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신적인 병적 소인이 있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요보호학생의 예상치 못한 발병, 발작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요보호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별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요보호학생 보호업무 개요

신학기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보호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을 배부하는 것과 함께 학생 주요 건강이상 사항, 유의하여 관찰을 요하는 사항, 담당교사 조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면서 건강이상 학생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한다.
요보호학생 기록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관리토록 한다. 기록지에는 전화번호, 지정병원.투약정보 등 의료 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직원은 요보호학생의 개인 신상, 병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

(3) 요보호학생 관리계획 및 상담지도

각반 요보호자 명단을 전체 교사의 교무수첩 기재, 교내 전산망을 통한 자료 공유 및 교사 연수시 안내 등을 통해 요보호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학년 초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현재 이후에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명단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신체적 결함 때문에 심리적으로 손상을 받기 쉬운 상태이므로 급우들에게 장애에 대해 설명을 하여, 놀리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급우들에 대한 설명과 도움 요청은 요보호학생의 부모가 공개를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보호학생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체육, 외부 체험활동 등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특히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사고 방지, 시력 보호, 예방접종 등의 필요성을 가르쳐준다.
학부모, 담임교사, 보건교사와 수시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한다.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는 학습 장애, 언어 장애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의 경우는 상담교사와 협조하여 학교 적응 등의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계속적인 추후관리를 실시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요보호학생의 연락처 변경 시 보건실로 통보한다. 응급상황 시 요보호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 학교장은 학기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교안전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지
- 각종 안전 업무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
- 안전사고 보상제도 통지 등

6) 외부 체험 활동 안전 대책

(1) 방문객의 학교 출입 관리 방안

(가) 일반사항
❍ 일과시간 내 : 외부인방문증 발급 및 패용안내(행정실 및 학교안전지킴이)
❍ 일과시간 외 : 출입문 폐쇄 후 당직근무자의 외부인 출입통제
(나) 택배, 식품자재 등 물품 수령 관리 방안
❍ 지정된 주차구역 지정(교사동 후면 주차장, 급식실 앞)
❍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교안전지킴이의 학생안전지도 실시

7) 통학 안전 지도 및 관리 방안

(1) 통학로 여건 분석
정문은 보차도의 분리로 학생통행이 비교적 안전하나 후문 출입 시에는 보차도가 일부 분리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2) 관리 방안
- 배움터 지킴이 등굣길 안전 지도 : 후문 학생 출입 교통지도.
- 학부모 아이 마중(배웅) 안하기 운동 전개, 안전운행 캠페인 등
- 조종례시 학생 교통안전 교육 실시
(3) 교내 차량 통행 및 주차 관리 방안
- 속도제한(10km). 비상깜박이 켜기, 보차도 구분

8) 희망반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1) 현황

구분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인가	편성	남	여	계	남	여	계
2020학년도	1	1	2	1	3	0	1	1

구분 / 인원	장애 유형										장애 원인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학습 장애	정서.행동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의사소통장애	발달 지체	건강 장애	약물	염색체이상	난산	가스	원인불명	기타
남	1	.	.	.	.	1	.	.	.	.	.	.	.	.		
여	1	.	.	.	.	.	.	.	.	.	.	.		.		
계	2	.	.	.	.	1	.	.	.	.	.	.		.		

학년	학생 수		계
	남	여	
1	1	0	1
5	1	1	2
계	3명		

구 분	1학년	5학년	총 계
완전 통합	.	.	.
전 일 제	.	.	.
시 간 제	1	2	3
총 계	1	2	3

(2) 안전관리 방안

-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관리

(가) 학생의 등·하교 방법 파악
- 등·하교 동의서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 방법 및 등교시간 정확히 파악

(나) 출결관리(등교시간 지연학생 관리) 상황 점검
① 1교시 수업시작 전까지 등교하지 않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확인 필수
② 통합학급담임교사 출결확인→특수교사 확인→보호자 확인 체제구축

(다) 등하교 시 학교 주변 위험 구역 현장 파악
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하교 경로에 위험구역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
② 위험 구역이 있을 시에는 전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안내
③ 등하교 길에 포함된 위험구역 상황 파악 후 관련 기관(시청 등)에 공문 발송하여 장애학생 사고 위험 안내 및 조치 협조 요청

(라) 등하교 안전교육
- 특수학급 교육과정에 포함된 안전교육 외에 등하교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등 하교 길 주의사항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

- 실종방지 지문등록 서비스 홍보 및 서비스 현황 파악

(가) 지문등록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가입 유도

(나) 지문등록 된 학생 파악 후 관리

- 장애학생 1일형 체험 안전교육 실시

9)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 강화

(1)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해'나침반 5분 안전교육'주 1회이상 운영
- 대상 및 운영 방법

구분	운 영 방 법
학생	· 조·종례시간 및 자투리시간 등을 활용 매일 5분 안전교육 실시 · 그 밖의 방법으로 각 급 학교 실정에 맞게 매일 안전교육 실시
교직원	· 교직원 회의 시 안전교육동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학부모	· 학부모 회의 시 나침반5분 안전교육동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2) 나·침·반 5분 안전송 활용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을 준비하는 음악으로 활용

(3) 학교 등.하교 교통 상황을 반영한 체험,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실시
- 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방문, 안전 통학로 지도 만들기 등 실시

(4) 황사, 미세먼지, 폭염 등 재난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및 건강관리 교육을 신속하게 실시
- 자연재난(대기오염 포함) 상황전파자(학교안전책임관 : 교감) 지정, 신속 대응

- 보건교사 중심의 건강관리 교육
- 대기오염(황사, 미세먼지 등),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수업단축, 임시휴업 조치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이후 7일 이내 보고

나. 안전사고 관리 및 재난 대응

1) 안전사고 관리 지침

가) 학교 응급의료관리

(1) 개념

(가) 응급의료와 응급처치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취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처치(First-Aid)란 응급의료 행위의 일종으로 생사여부의 기로에서 행하는 기본소생술(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기도폐쇄), 그밖에 신체에 발생한 각종 질환과 외상에 대한 현장에서 행하는 간단한 치료로 구분된다.

(나) 학교 응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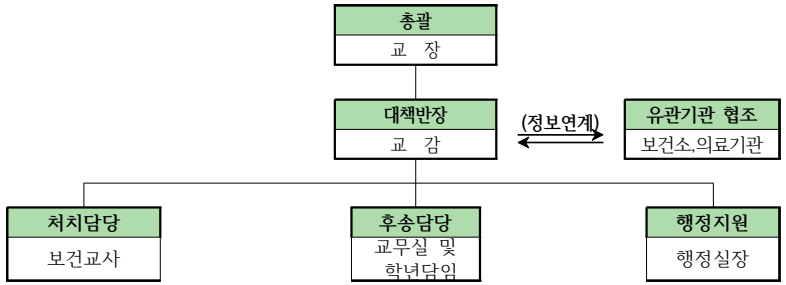
학교 응급체계란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발생한 응급상황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의 관리체계를 말한다.

(2) 체계

(가) 응급상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관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응급상황관리한다.

(나) 응급구조체계 구성



학교장은 총괄책임자가 되어 응급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한다.

교감은 대책반장이 되어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조치를 지휘·감독한다.

처치담당은 보건교사로 하되 학교 내 초기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전까지의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심폐소생술 연수 이수 교사 2인 이상을 보건교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다.

후송담당은 이송 담당 교직원의 부재를 예상하여 2인 이상으로 지정하고, 담임교사(학년부장교사)는 이송반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이송에 반드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지원반은 응급학생 처치 및 이송 시 발생되는 치료비, 보상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응급사고 대비 사전 동의서 징구

학년 초「학생건강조사」설문 시 학교 응급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응급사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병원이송에 관한 동의서 징구
- 학부모 연락처(1차), 학부모 권한 대행자 및 연락번호(2차, 3차)
- 요보호학생의 경우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 학부모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학교나 사고현장의 인근 병원 또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 설문조사지 활용에 대한 동의서 미제출자는 동의로 간주

(다)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응급환자 발생 시 상황판단(check), 도움요청(call), 응급처치(care)의 단계로 응급처리를 시행한다.

① 상황판단(CHECK)

<응급상황여부 확인하기> 최초발견자(교직원)는 환자 상태, 주변환경 파악 등 응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파악한 후,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응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19에도 도움요청을 동시에 취한다.

<환자상태 파악하기> 보건교사는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준비를 한다.

② 도움요청(CALL)

<응급구조 요청하기>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119 응급구조 차량 이송 요청 기준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 병원 이송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송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판단이 모호할 경우는 1339 또는 119에 전화 문의

<응급구조체계 가동하기> 학교안전관리연간계획에 따른 응급구조체계에 따라 응급처치와 관리를 수행한다.

③ 응급처치(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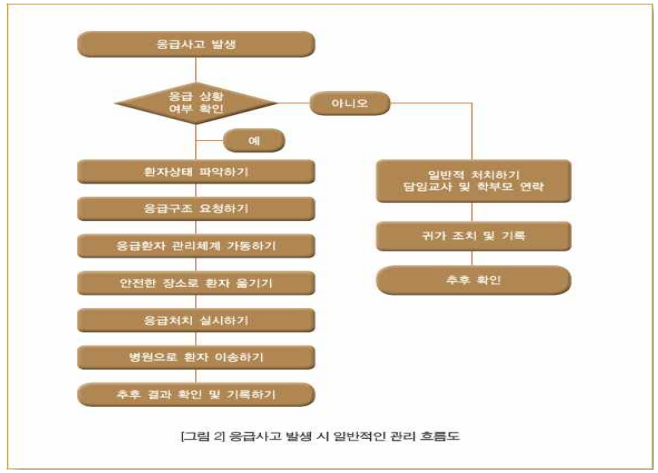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가능한 경우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되,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전문가의 응급처치 요령에 따른다.

<응급처치 시행하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른다.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지시에 의한 응급처치는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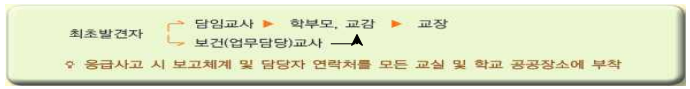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교사 및 심폐소생술 가능자가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학교에서 가까운 응급의료센터, 학교 협약병원 또는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치가 가능한 간단한 상해는 보건실 처치 후 부모에게 연락하고 귀가 조치한다.

<기록 및 추후 결과 확인하기> 전문가 인계 및 병원 이송까지의 과정을 6하 원칙에 따라 '응급환자 기록지'에 기록·보관한다. 사고발생 최초발견교사(담임, 현장임장교사 등)는 사고 발생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다.



[그림 2] 응급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관리 흐름도



응급환자 보고체계

나) 심정지소생

(1) 개요

(가) 심정지의 정의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공급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정지되었을 때 발생한다. 심정지는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거나 경련이 유발되면 산소공급 중단으로 심장박동이 정지하며, 익수, 질식, 약물중독이 심정지의 원인이 된다.

(나) 심정지와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5개의 응급처치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일명 '생존사슬'이라 한다.

심정지 확인 ⇒ 심폐소생술 ⇒ 제세동 ⇒ 전문 소생술 ⇒ 심정지 후 치료



심정지와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

심정지 환자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생존사슬이 신속히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존사슬 중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를 제외한 앞의 3가지 사슬은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 시행되므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은 이를 발견한 목격자에 의해 좌우된다.

심정지와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

상황	학생 행동요령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 응급의료체계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119구급대원을 출동시키는 일련의 과정
신속한 심폐소생술	• 최상의 응급처치는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 목격자가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생존율 2~3배 향상
신속한 제세동	•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 가능성은 7~10%씩 감소 • 자동제세동기의 개발 및 보급으로 환자의 생존율 증가
효과적 전문 소생술	• 자발순환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약물 투여 및 전문소생술 필요 •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에 중요
심정지 후 통합 치료	• 최근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게서 심정지 후 치료가 강조 • 소생된 환자는 전문적인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

(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의 한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심장정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취해져야 할 조치이지만,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뇌에 혈류 공급을 재개·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의학적 처치를 전제로 한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요청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도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선한 사마리아인 법)

심폐소생술 실시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이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선의로 이러한 응급처치(의료)를 시행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면책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대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2)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에 대한 구조자의 행동요령을 심폐소생술이라 하는데, ①신속한 심정지 확인 ②119 신고 ③가슴압박 ④기도유지 ⑤인공호흡 ⑥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의 순서로 실시한다.

(가) 신속한 심정지 확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한다.



(나) 119 신고

심정지 상태임을 인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만일 목격자가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받은 구조자이고 주변에 제세동기가 있다면 즉시 사용하며,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119 신고 시 구조자는 응급의료상담원의 질문에 발생장소와 상황, 환자의 숫자와 상태, 필요한 도움 등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다면 응급의료 상담원이 전화를 끊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전화지시를 따르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한다.



(다) 가슴압박(30회 시행)

① 가슴압박점과 압박방법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히거나 등에 단단한 판을 깔아 준다.



○ 압박점 : 가슴의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부위 (환자의 유두 연결선이 흉골과 만나는 지점)

○ 압박속도 : 강하게 규칙적으로 빠르게(100회/분~120회/분)

○ 압박깊이 : 성인 최소 5cm~6cm, 소아 가슴깊이의 1/3(5cm) 이내

② 압박자세

구조자의 한쪽 손바닥 두덩(heel)을 압박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한다. 손가락은 펴거나 깍지를 끼며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팔꿈치를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한다.

(라) 기도유지

① 머리 젖히고/턱 들어 올림(head tilt-chin lift)

구조자의 한 손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 기울임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② 경추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턱 밀기법(jaw-thrust maneuver):

구조자가 환자의 머리 쪽에 위치하여 두 손으로 환자의 하악골을 받쳐주면서 하악골을 전방으로 미는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마) 인공호흡(2회 시행)

기도개방을 유지하며 이마에 얹은 손의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언저리에 입술을 밀

착시키고 두 번 충분히 숨을 불어 넣으면서 환자 가슴의 오르내림을 관찰한다.



○ 가슴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가슴압박(30회)과 인공호흡(2회)의 반복:

30회의 흉부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구조자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30(압박):2(호흡) 5회 반복 후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3) 자동제세동기

(가) 자동제세동기의 정의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機,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자동제세동기는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이다.

(나) 자동제세동기의 사용과 한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다.

자동제세동기는 교육이수자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데 급성심장정지 상황 인식, 응급구조 연락 방식, 심폐소생술 시행 방식 및 주의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자동제세동기 사용의 중요성

갑자기 발생된 심정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세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전기적 제세동이다.

제세동 성공률은 심실세동 발생 직후부터 1분마다 7~10%씩 감소되므로, 제세동은 심정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의료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나 의료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 준다. 그러므로 자동제세동기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상시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제세동기를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

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방법

① 전원켜기

자동제세동기는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버튼을 누른다.



② 2개의 패드부착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부착한다.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부착 패드와 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한다.



③ 심장리듬분석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④ 제세동 시행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한다. 깜박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한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한다.



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다)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1) 도폐쇄 개요

기도폐쇄란 기도로 들어간 이물질이 기도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 호흡을 방해하는 상태이다. 어린이 및 노년층에 주를 이루고 있으며, 뇌로의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 및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혈액, 음식물(사탕, 고기, 젤리, 떡, 땅콩 등), 입안 손상으로 부러진 치아나 출혈, 구토물 등, 혀 또는 목구멍의 근육이 뒤로 말리는 경우(의식이 없을 때) 기도가 막히기도 한다.

기도폐쇄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빛이 금세 파래지고, 기도가 완전히 막히게 될 경우 말과 기침, 호흡도 할 수 없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2) 응급처치 절차

(가) 의식이 있는 경우

말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침을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는 119에 연락한다.

기침 유도가 되지 않으면 복부 밀어 내기법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임리히 요법, Heimlich)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하임리히 요법을 시행하다가 오히려 이물질이 깊숙이 들어가거나 복강 내 장기가 손상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한 후 실시한다.

하임리히 요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처치자는 환자의 등 뒤에 선다.
○ 한쪽 팔로 환자의 허리를 감싼다.
○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방향을 환자의 배꼽과 명치끝의 중앙부분에 둔다.
○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후 빠르게 후상방으로 환자의 배를 밀쳐 올린다.
○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반복한다.
○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무반응을 주위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다.

○ 환자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도록 반듯하게 눕힌다.
○ 무릎을 꿇고 앉아 명치위에 손바닥을 대고 손깍지를 끼운다.
○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를 상복부를 5회 정도 강하게 밀쳐 올린다. (가슴 밀어내기 법)

○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고 의식이 회복된 후에는 복부장기 손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하게 한다.



(다) 체구가 작은 소아의 경우

○ 소아의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 등(양쪽 견갑골 사이)을 5회 정도 두드린다.

○ 위의 방법이 실패하면 아이를 눕히고 명치끝 부분을 후상방으로 5회 정도 밀어준다.

※ 1세 이상의 소아와 성인은 복무밀어내기 방법이 효과적이다.



○ 응급의료종사자는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에 대해 먼저 기도를 개방하고 입안을 확인해 이물질이 보이면 턱과 혀를 동시에 한 손으로 쥐고 들어 올리면서 손가락으로 훑어내기(finger sweep)로 제거한다.

라) 유형별 긴급응급처치

심정지나 기도폐쇄와 같은 생사의 기로에 선 생명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외의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당장 가능한 응급처치를 한 후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의 회복과 예후에 보다 기여할 것이므로 주요 신체 질환 및 외상별 행동요령을 기술하였다.

질환, 외상, 주요 신체부위 외상, 매개물에 의한 질환 및 외상 순서로 설명하였다.

(1) 일반질환

일반질환별 긴급응급처치

상황	행동요령
고열	• 옷을 가볍게 입히고 미지근한 수건으로 닦기 • 수분을 공급하고 용법대로 해열제 복용
쇼크	• 생명이 위험한 증상을 우선처치 • 의식과 호흡을 평가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 실시 • 119 도움요청, 신속하게 병원이송
실신	• 환자의 다리를 올려주고 끼는 옷과 허리띠는 느슨하게 풀어줌. • 환자가 쓰러질 때 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는지 확인 •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고 얼굴에 찬 물건을 대주면 회복에 도움
경련	• 주변에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움. •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 - 경련 멈추면 옆으로 눕혀서 회복자세 •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수건이나 옷을 펴서 머리에 깔아 주어 억지로 잡거나 누르지 않기 • 치아 사이에 아무것도 물리지 않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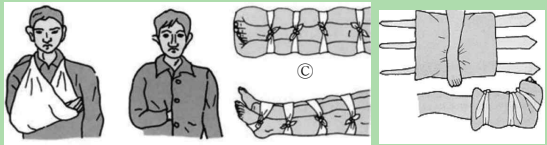
(2) 일반외상

일반외상별 긴급응급처치

상황	행동요령
상처	• 흐르는 물에 씻고 거즈나 붕대로 압박 • 못, 바늘, 철사, 총알 등에 찔리거나 조직을 뚫고 지나간 상처는 빼려고 하지 말고 병원으로 이송  <흐르는 물로 이물질 제거> <물기제거> <반창고나 거즈로 상처보호> 상처의 종류 : 찰과상(긁힘), 열상(베임), 자상(찔림), 절단
출혈	• 출혈이 심할 경우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혈점을 압박 •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 지혈 • 외부출혈이 없는 내출혈은 쇼크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병원 이송
화상	• 화상부위를 흐르는 물(시원한 물)에 화끈거리는 증상이 없어질 때 까지 최소 10분 이상 식히기 • 화상연고 등은 화상부위가 완전히 식은 이후에 바른다.(1도 화상) •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주, 된장 등을 바르지 않음 • 옷 아래 화상을 입은 경우 옷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옷 위에 시원한 물을 부어 화기를 식힘(옷은 떼지 않고 가위로 자른다.) • 2차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 치료

(3) 주요 신체부위 손상

주요 신체부위 손상별 긴급응급처치

상황	행동요령
골절 염좌 타박상	• 골절, 염좌, 타박상의 공통된 응급처치요령(RICE요법) ① Rest(안정) :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게 함 ② Ice(냉찜질) : 찬 것을 부위에 대어주어 통증과 부종을 가라앉힘 ③ Compression(압박) : 탄력붕대로 환부를 적당한 강도로 압박 고정 ④ Elevation(상승) : 심장보다 높게 하여 손상된 부위의 부종을 예방 ⑤ 부목을 대어 병원으로 이송  Ⓐ Ⓑ Ⓒ Ⓓ <발목뼈 골절>
두부손상	• 상처가 있는지 살피고, 출혈이 되면 상처를 압박한 다음 붕대로 고정 • 구토나 울렁증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 요함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안내 • 상처가 크거나, 귀나 코에서 피나 수액이 나오거나, 토하고 경련 또는 의식이 떨어질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척수손상	• 머리에 외상이 있다면 척수 손상을 의심해야 함 •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후, 119를 통해 이송
눈손상	• 눈을 함부로 비비거나 만지지 않도록 함 • 박힌 물체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 • 손상된 쪽과 다치지 않은 쪽 모두 가려주어서 2차 손상 예방 • 양쪽 눈을 가리는 경우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므로 응급처치과정 설명 • 수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치아손상	• 빠진 치아는 30분 이내 재이식될 수 있으므로 치아를 우유에 담근 채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 치아가 부러진 경우 치아 부위 얼굴에 얼음팩을 대어 부조을 경감시키고 즉시 치과병.의원으로 이동

(4) 매개물에 의한 질환 및 외상

매개물에 의한 질환 및 외상별 긴급응급처치

상황	행동요령
열경련	•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편안한 자세를 해줌 •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음료 또는 물을 줌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음) • 경련이 있는 부위는 압력을 주어 마사지 하거나 찬 수건을 대줌 • 만약 경련이 계속된다면 병원으로 이송
일사병	• 시원한 장소로 옮김 • 편안한 자세로 해주고 옷을 벗겨줌 •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 음료 또는 물을 줌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음)
열사병	•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김 •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주고 부채질을 해줌 •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내려주는 것 •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
벌 쏘임	•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신용카드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내 벌침 제거 • 벌침 제거 후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비눗물로 상처 부위 세척 •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
뱀 물림	• 물린 팔이나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아래로 내림 • 물린 부위의 위와 아래쪽에 적당한 압력을 주어 묶어 병원 이송
약품 피부 접촉	•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 • 강한 산이 묻었을 때 묽은 암모니아수 또는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중화
약품 흡입	•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 요청 • 환자가 황산을 섭취 또는 흡입하였을 경우 호흡용 기구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하고, 구강 대 구강법을 이용한 호흡은 하지 않음
먹었을 때	•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임의대로 구토를 시키거나 중화시키지 않음 • 초기에는 삼킨 것을 주의하여 물 등으로 위세척을 하면 좋음 • 식도나 위장 내에 화상을 입을 경우, 위세척을 할 때 잠재적인 출혈이나 위 천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하도록 함

마)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대처요령

학교안전사고는 학생들 간의 장난, 게임, 사소한 다툼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라 해도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으며, 경제적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가능하다. 초기 대응이 미숙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팽배하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처리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건교사 혹은 사고현장 관리교사는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확보하며,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도 기록한다. 아울러 교사의 직무 수행과 사후조치 내용도 기록한다.

책임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한다.

사고처리에 있어 사고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 한다.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친권자인 학부모와 직접 협의한다. 학부모 아닌 제3자 개입 시, 사고처리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특히 손해사정사가 피해학생을 대신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고 피해보상을 중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하게 된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대처요령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학교안전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교육청 법무담당관실에 소속된 변호사 자문을 구하거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1688-4900) 또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를 이용하여 법적 자문을 구한다.

2) 재난 대응 지침

가) 재난 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공유

나) 비상 배낭의 마련과 관리

- ❍ 비상시 외부인도 누구나 쉽게 학교현황을 파악하고 위기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리자(행정실장)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
- ❍ 비밀문서 등과 같이 행정실 캐비닛 보관, 보안.관리에 철저

<비상배낭의 구성(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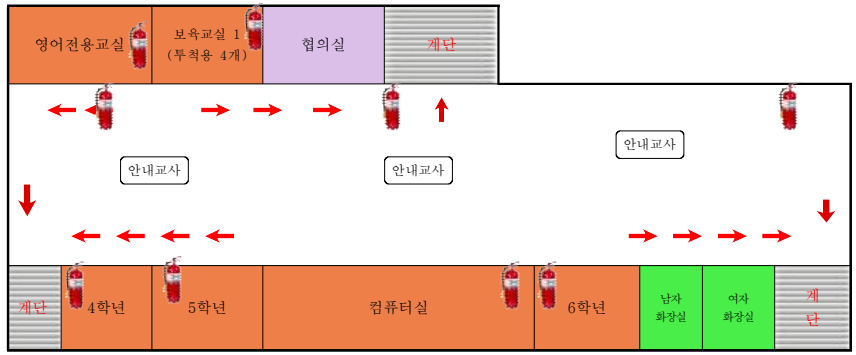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학생 대피장소,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등

※ 학교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계획서 내용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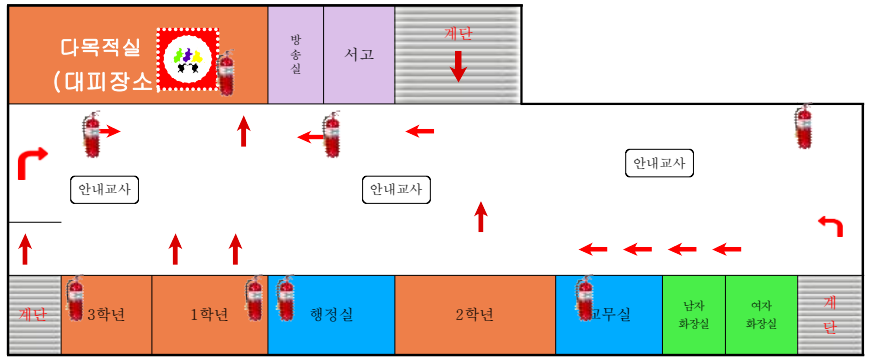
다) 주요 설비 및 장비 배치도

❍ 층별 비상 평면도(소화기 배치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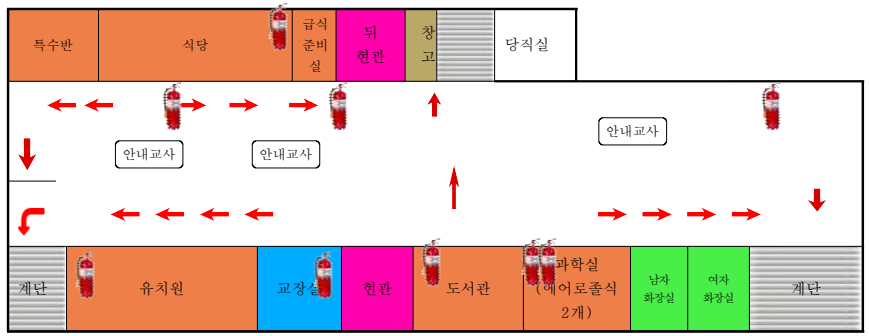
[3층]



[2층]



[1층]



라) 비상 시 대비 훈련계획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연 1회 5일)

- 기간 : 10월 26일 - 10월30일 예정
- 이론 및 전달위주 교육에서 탈피, 현장지원 대책과 몸으로 체험하는 실질적 훈련 기반 마련(소화기 사용법, 대피호 위치확인 등)

❍ 민방위 대피 훈련(연2회, 「민방위기본법」제25조)

❍ 지진·화재 대피훈련(연2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규정」제14조)

- 1회는 소방서와 함께하는 학교 재난대피훈련 실시

마) 대응 절차와 행동 수칙

(1)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처요령

단계별	대 처	비고
1단계	❍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것** - 심장발작, 출혈, 골절 등 몸의 손상시에는 신속한 대응 필요 ※ 위급상황 인지 방법 1) 청각 :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건물 무너지거나 쌓아놓은 물건이 무너지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소리 2) 시각 : 처박힌 자동차, 바닥에 떨어진 기구나 약병, 흘러내린 피, 늘어진 전선 3) 후각 : 역하거나 독한 냄새, 매캐한 연기 4) 증상과 징후 : 의식이 없을 때, 숨쉬기 곤란할 때, 가슴과 목의 통증, 이유 없이 흘리는 땀, 창백하거나 붉고 푸르게 변한 피부 색깔	
2단계	❍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A or B 선택)** - 위급상황을 인지하였다면,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탈출할 것인지, 그대로 있을 것인지, 어디로(앞, 뒤) 대피할 것인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신속하게 결정 ※ '15.10.27. 상주터널 화재 사고시 수학여행 동행 소방관이 학생을 대피시킨 사례와,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를 비교하여 볼 때 동 단계 매우 중요	
3단계	❍ **119(112)에 신고**(필요시 신고자 지정, 신고자는 통화상태 계속 유지) - 위치, 사고 상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	
4단계	❍ **응급의료요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할 것** - 주변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 즉각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실시(교내에서는 보건교사, 수학여행시 안전요원 등)	

(2) 비상 커뮤티케이션(재난기관대응, 교육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 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유선	가두 방송	가평군 청평면주민센터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	음성 방송, 타종, 호루라기	타종,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방송실, 교무실

❍ 발생한 재난 또는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에 따라 교직원, 재난대응, 응급의료, 관계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에 따른 비상 커뮤니케이션 실행

❍ 비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 :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 학부모들의 정보요청에 응대하기 위해 학교 전화번호 중 하나(또는 그 이상의 회선)를 핫라인으로 지정 운영

바) 긴급 대피 시 학교구성원 역할 : 대피/역대피(실내대피)

구분	역할(예)	비고
학교장/사고지휘관	- 119(112)신고(필요시 통화담당자 지정) - 방송, 확성기 등을 사용 경보방송(긴급상황, 대피장소, 대피로 등) - 대피절차 지원 교직원 결정 - 지속적인 상황 모니터링 - 교육청관계자에 상황통보 등	
교원	- 학교장/사고지휘관의 지시한 경로에 따라 학생 이동 유도(비상연락 유지) - 1차 대피로가 막혔거나 위험상황인 경우 2차 대피로 이용 - 특별배려자를 도와주기로 지정한 학생에게 대피지원 지시 - 대피장소 도착 시 부상학생 및 인원 확인 학교장/사고지휘관에 보고 등	
행정직원 등	- 전기, 가스, 수도시설 통제 - 출입자 통제, 119 등 외부기관 활동 지원 등	

사) 재난별 대응

1 Drop-cover-hold(몸을 낮추고, 머리를 감싼 자세 유지)

(1) 목적

Drop-Cover-Hold는 사전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폭발, 건물 붕괴, 태풍, 지진 등에 의해 교실 천장과 벽 등에 놓인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교실 외부에서 날아오는 파편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는 절차이다.

(2) 역할

지정된 교직원들은 이러한 절차의 개발, 실행, 평가에 참여한다.

(3) 절차

(가) 실내 절차

실내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바닥으로 몸을 낮춘다.
- 튼튼한 테이블, 책상 또는 그 밖의 가구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만일 자신이 있는 곳에 이를 위한 적합한 가구가 없다면, 자신의 팔로 얼굴과 머리를 보호한다.
- Drop-Cover-Hold를 그만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유지한다.
- 교직원들은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의 지시가 있다거나 또는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 하다고 결정했을 때, 학생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장소로 대피시킨다.
- 교직원과 학생은 대피시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나) 실외 절차

실외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건물, 가로수, 전신주 등과 떨어진 장소로 이동한다.
- 땅바닥을 향해 몸을 낮춘다.
- 자신의 팔을 이용하여 얼굴과 머리를 보호한다.
- 교직원은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의 지시가 있다거나 또는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때, 학생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장소로 대피시킨다.

(다) 차량 이동 중의 절차

이동 중인 차량에 있는 운전기사/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즉시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정차시킨다.
- 모든 학생/교직원들에게 차량 안에 머물도록 지시한다.
-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때 조심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 밖으로 대피한다.

2 화재

(1) 목적

- 학교는 소방훈련에 관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화재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훈련받는다.
- 화재 또는 연기를 발견한 사람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 교장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또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즉시 신고한다.
- 비상사고지휘관(소방관)이 도착하면, 화재현장에서 이들의 지시를 따르고 협력한다.

(2) 역할

(가) 학교장/안전책임관

- 119에 신고하거나 신고자를 지정하여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였음을 알리고, 학교 이름과 위치, 화재 또는 연기가 나는 정확한 장소, 교직원 또는 학생들 중의 부상자 발생 유무와 규모, 대피 실행 여부, 교내 사고지휘소의 위치를 알린다.
- 대피 명령을 발동시킨다.
- 교직원, 학생, 방문객들을 지정된 대피경로(1차 대피경로가 화염이나 건물파손 등으로 인해 막힌 경우에는 2차 대피경로를 이용)를 이용하여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지정된 집합장소가 건물붕괴나 화염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집합장소를 재배치한다.
- 교육청에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시작한다.
- 교직원에게 학교 방문자 명단, 조퇴학생 명단, 사고대응에 필요한 중요문서, 도면, 정보, 물품 등을 교내에 설치된 사고지휘소에 가져오도록 한다.
- 교사들로부터 등교학생의 명단을 취합하여 실종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직원을 지정한다.
-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화재로 인해 안전이 불안해진 경우)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으로 대피하여 지정된 재배치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 재배치를 실행하는 경우 가정복귀 절차를 가동시킨다.
-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로 다시 돌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화재현장의 소방관 또는 재난지휘관으로부터 안전을 확인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교직원들에게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이들이 언제 교실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나) 교사/직원

- 출석부, 비상배낭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챙기고, 학생들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차분하게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다.
- 지정된 경로가 막혔다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대피경로를 활용한다.
- 이동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탈출을 돕거나 또는 도와줄 사람을 지정한다.
-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이나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명을 끄고 교실 문을 닫는다.
- 집합장소에 학생들이 모두 모였는지를 확인한다.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 사고지휘관/학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 학생들이 집합장소에 모여 있도록 지도하면서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것이 안전해졌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 소방서에서 안전을 확인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3 황사/미세먼지

(1) 목적

눈, 코, 기관지 질환, 심한 경우 심장과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빈번한 황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2) 역할

(가) 학교장/안전책임관

- 기상청의 황사/미세먼지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기상청의 황사주의보(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범위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시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 학생들의 실외.야외학습을 실내학습 활동으로 검토.조정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교내 및 주민자치센

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을 점검.확인한다.

- 기상청의 황사경보(매우 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시 교사들에게 황사 관련 질환자를 파악.보고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조기귀가, 치료 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교사/직원

- 황사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 학생들에게 황사 발생 대비 목, 코, 눈 보호를 위한 다음의 대처요령을 교육한다.
  - 황사 발생 중 실외.야외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검토.조정한다.
- 황사경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황사 관련 질환자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하며, 특별 관리(조기귀가, 진료 등) 결정시 보건교사와 협조하여 이를 실행한다.

(다) 보건담당 교사/영양교사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를 점검.강화한다.
- 황사 관련 질환자의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등) 필요성을 파악하고 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황사 종료 후 실내.외(급식소)를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목 보호 대처행동

- 물 적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
- 창문을 닫고 물수건을 널어 적정한 습도를 유지한다
- 양치질(혓바닥, 잇몸포함)을 하고, 깨끗한 물이나 가글로 목구멍을 헹군다

코 보호 대처행동

- 코를 엇박자로 눌러 콧물을 빼낸다
- 콧구멍을 한 쪽씩 막고 번갈아 푼다
- 깨끗한 물로 콧속을 세척한다

코 보호 대처행동

-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겨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절대 비비지 말고 자라리 눈물이 흐르게 한다
- 렌즈를 끼던 사람은 안경으로 바꾸어 착용한다
- 눈을 편안하게 쉬게 해준다
- 두 손을 비벼서 열이 나게 한 후 두 눈에 갖다 대어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

4 락다운(Lockdown)

(1) 목적

락다운은 흉기 난동이나 불법침입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간장벽(time barrier)을 만들어내기 위한 초기의 물리적 대응방안으로 독립형 방어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 후, 그곳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문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대피방안 또는 필요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2) 역할

(가) 학교장/안전책임관

- P/A시스템, 무전기, 전화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전달한다.

> "주의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지금 락다운을 실시합니다."

- 112 신고자를 지정하고, 그는 학교명과 주소, 비상상황을 설명하고 학교가 락다운을 실시하였다는 사실과 (만일 파악하고 있다면) 불법침입자의 인상착의와 소지한 흉기, 학교의 사건지휘

소 위치 등을 전달한다. 업데이트된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신고자가 전화통화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 건물 외부에 있는 교직원들과 운동장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즉시 학교 밖 집합장소로 이동할 것을 통보하고,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이들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체험학습 후 돌아오는 버스가 있는 경우) 버스의 배차담당자 또는 운전기사를 관리하는 용역회사에 학교로의 운행을 중단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것을 통보한다.
- 교육청에 락다운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린다.

(나) 교사

- 복도와 화장실에 있는 학생들을 자신의 교실로 들어오도록 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도록 한다.
- 문을 잠근다(복도측 창에 설치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서 복도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한다).
- 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커다란 물건들을 옮겨 놓는다. 이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의자 등의 물건들을 활용한다.
- 출석을 확인하여 실종된 학생 또는 자신의 교실에 피신 중인 학생이나 방문객에 대한 사항을 학교 사고지휘관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흉기소지자나 불법침입자가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이들로부터 학생들이 재빠르게 뛰어서 탈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 교직원과 학생들은 큰소리를 지른다거나 흉기소지자/불법침입자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향해 물건을 던짐으로써 이들이 흉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준비한다.
- 학교 사고지휘관으로부터 위협상황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전달받는다거나 창문 등을 통한 안전한 이동경로를 확보하기 전까지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다) 행정직원

- 응급구조기관 등과 학교 안전책임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리며 전화기 옆에 대기한다.
- PA시스템, 전화, 컴퓨터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교실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의 지휘소 설치를 지원한다.

(라) 시설관리자

- 물류차량의 출입문을 포함하여 모든 출입문을 닫고 잠근다.
- 물류차량기사, 작업자, 용역직원 등이 건물 내의 안전한 장소에서 문을 잠그고 있도록 지시한다.

※ 락다운이 실시되는 동안 건물 외부에 일부 학생과 교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은 이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다.

5 흉기 난동

(1) 목적

흉기를 사용한 교내 범죄사고의 발생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2) 역할

(가) 학교장/안전책임관

- 교직원에게 112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시받은 교직원은 학교명과 주소,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 발생한 비상상황의 성격, 불법침입자의 수와 용모(생김새와 복장 등), 소지한 흉기의 종류, 이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 학교가 취한 행동 그리고 현재 학교의 보안요원들이 위치한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자는 112와의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사건지휘소인 행정실(또는 교무실)에 대한 경비를 실시하고, 커뮤니케이션, 교직원과 학생들의 위치, 학교와 건물의 평면도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학교비상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문서와 물품 등을 준비해 놓는다. 만일 사건이 행정실(교무실)에서 일어나는 경우 사건지휘소로 사용할 별도의 장소를 지정한다.
- 행정직원들로 하여금 인터폰이나 무선전화기 등을 통해 교사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건 발생을 통지하고 대응을 요청한다.
- 교사와 학생들을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필요시 학교 밖의 재결집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것을 지시한다.
-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학교로 들어오고자 하는 방문객과 차량의 진입을 막도록 지시한다.
- 학교를 향해 오고 있는 모든 버스(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들은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가도록 지시한다.

(나) 교사/직원

-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경찰관과 같은 사고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락다운을 실행한다.
- 만일 무단불법침입자를 학교에서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112에 신고한 후 이러한 사실을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통보하여 락다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실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신의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자신의 교실에 피신해 들어온 사람들의 수를 확인한다.
- 건물 밖으로의 대피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닌 경우,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사건현장지휘관(경찰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교실 내에서 락다운 상황을 유지한다.
- 만일 불법침입자가 교실에 들어온 상황인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위협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 만일 불법침입자가 교실에서 흉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흉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책, 컴퓨터, 전화기, 가방 등을 던져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거나 침입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교실 밖의 다른 장소로 도망가라고 말한다.

(다) 그 밖의 절차

- 흉기난동자/불법침입자의 행동이 진압된 후, 학교장/안전책임관은 사건현장지휘관(경찰관)과의 협의하여 방송을 통해 대피 실행과 가족복귀를 위한 장소로 재결집할 것을 안내한다.
- 교직원 또는 학생이 부상당한 경우 응급구조요원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의료처치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대피학생들이 모여 있는 재집결 장소의 지휘관에게 가족복귀 절차의 실행을 통보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재집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 등의 교통편을 요청한다.
- 교사들은 지정된 대피경로를 이용하여 사전에 배정된 집합장소로 학생들을 대피시킨 후,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버스 승차장으로 이동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위기대응팀의 활동 개시와 정신건강 치료절차의 시작을 지시하고, 정신건강 서비스기관에게 상담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통보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듣는다.
- 학교장과 교육장(또는 교육장이 지명한 자)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가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 후, 이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6 무단침입/인질극

(1) 목적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내에서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학교 재산을 보호한다.

(2) 역할

(가) 모든 교직원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사전에 받아 놓아야 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른다.
- 만일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임을 밝힌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왜 방문했는지 묻는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비실에서 방문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이들과 동행하여 경비실로 이동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의 학교 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에게 학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
-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한다.

※ <u>만일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u>

- 무단침입자가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이들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들과 만난 당시의 상황(이들을 발견한 장소, 인상착의, 소지한 무기.흉기 또는 소지품 등)을 파악한다.
-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단침입자와 시각적 접촉을 유지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경찰(112)에게 학교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무단침입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한다(되도록이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단침입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 학교장/사고지휘관은 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락다운을 발령한다거나 경찰의 지시에 따

라 적절한 절차를 실행한다.
- 만일 인질극을 벌이는 자가 당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끼어들지 않는다.

※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인질이 된 경우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인질범의 지시에 따르거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 인질이 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이 있는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인질범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인질범과 언쟁을 벌이지 않는다.

(나) 학교장/안전책임관
- 즉시 112에 신고한다. 인질범의 수와 인상착의, 인질극이 벌어진 정확한 장소, 학교가 취한 조치(락다운 또는 폭발물을 소지한 인질범에 의한 대피)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알려준다. 인질협상팀에게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 락다운 또는 상황에 적합한 필요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 건물 바깥에 위치한 교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한다.
-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격리시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질범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교육장에게 인질극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시킨다.
- 인질범과의 협상을 위한 팀이 도착하는 경우 이들에게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다.
-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다) 교사/직원
- 교직원은 락다운 또는 지시가 내려진 절차를 실행한다. 만일 학교 건물 밖에 있는 경우 학생들을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 후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7 폭발사고

(1) 목적

보일러 과열, 가스누출, 화학(위험)물질의 유출, 사람에 의한 폭발물 설치, 자연재해 등의 결과로 폭발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학교가 취해야 할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대피 프로토콜
- 가정복귀(학생/학부모 인계) 프로토콜
- 응급의료 프로토콜
- 정신건강치료 프로토콜

폭발을 목격한 교직원, 학생 또는 방문객 등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후 폭발사고가 발생했음을 학교장과 119에 신고한다. 폭발사고 현장지휘관(소방관/경찰관)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들에게 넘기고 이들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한다. 또한 소방당국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2) 역할

(가) 학교장/안전책임관
- 119에 전화를 걸어 폭발사고로 인해 화재경보기를 작동하였음을 알리고, 학교 이름과 위치, 폭발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지점,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 상황, 건물 대피 현황과 사고지휘소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대피를 발동시킨다.
- 사전에 지정해 놓은 1차 또는 2차 대피경로를 통해 교직원, 학생, 방문객들을 건물 밖의 집합장소로 즉시 대피시킨다. 집합장소가 폭발에 의한 붕괴 또는 지속적인 폭발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재집합하도록 지시한다.
- 교육청에 폭발사고가 있었음을 통지하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한다.
- 방문자 명단, 조퇴학생 명단, 사고 관련 중요문서, 정보, 물건, 물품 등을 지정된 사고지휘소로 가져올 사람을 지명한다.
- 교사로부터 학생명부를 취합하여 실종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직원을 지명한다.
- 가스, 전기, 수도 등 관련 시설을 잠그기 위해 움직이는 것에 별다른 위험성이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지시한다.
-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교육장, 소방관, 경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집합장소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결정되면, 교직원과 학생들을 재배치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다.
- 재배치를 실행하는 경우 가정복귀 절차를 가동시킨다.
-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수업 진행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응급재난기관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교직원과 학생의 건물진입을 금지시킨다.

(나) 교사/직원
- 수업출석부, 비상배낭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챙긴 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침착하게 학생들을 건물 밖 지정된 집합장소로 데리고 나온다.
- 1차 대피경로가 막혔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2차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피경로를 이용한다.
- 이동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돕는다거나 도와줄 사람을 지정한다.
- 모든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한다.
- 집합지역에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학교장/안전책임관에게 알린다.
- 학생들과 함께 머물면서 추후의 지시를 기다린다.
-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전까지 안전한 지역에 대기한다.
- 학교 밖에서 재집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 학생들에게 이동을 준비시킨다.
- 재난안전기관의 확인이 있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8 폭염

(1) 목적

통상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 폭염에 의한 열부종,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일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2) 역할

(가) 학교장/안전책임관

- 기상청의 폭염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기상청의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자제시키도록 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교내 및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을 점검.확인한다.
- 기상청의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 발생시 학교의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나) 교사/직원

- 폭염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
  - 폭염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의 실외.야외활동을 자제시킨다.
  - 체육활동 등의 실외수업은 그늘이나 체육관에서 실시한다.
- 폭염경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실외.야외활동을 금지시킨다.
  - 체육활동 등의 실외수업은 실내수업으로 대체한다.
- 폭염에 의한 환자 발견시 생명이 위험한 긴급상황임을 인식하고, 119 연락 및 현장에서 몸을 차게 식히는 등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한다
  - 시원한 장소(통풍 잘되는 그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 등)로 옮긴다.
  - 옷을 벗긴 후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차게 식힌다. 만일 얼음주머니가 있을 경우 이마, 목, 겨드랑이, 가랑이 등에 대어 몸을 식힌다.
  - 환자의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한 경우
    -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스포츠 드링크)를 먹인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염분(식염수 → 물 1ℓ에 소금 1~2g)을 섭취케 한다.
  - 환자의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19에 연락한다.
    - 불렀을 때나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이상하거나 응답이 없거나 토하는 증상을 보이면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히며 수분섭취를 금지한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킨다.

(다) 보건담당 교사/영양교사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한다.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에 취약한 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자와 과체중자)를 특별 관리한다.

9 태풍·집중호우

(1) 목적

폭풍우를 동반하는 태풍과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호우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 한다.

(2) 역할

(가) 학교장/안전책임관

- 재난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집중호우 주의보.경보를 확인한다.
-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주의보(태풍으로 인한 강풍.풍랑.호우가 예상될 때, 6시간의 강우량이 7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 및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확인한다.
  - 지역 내 저지대(지하로) 및 상습침수구역의 위치를 교직원에게 알린다.
  - 교사들에게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의 교육 실시를 지시한다.
  -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용한다.
  - 침수.단전 등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학교 내 붕괴, 산사태, 침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접근금지 표시, 배수로 청소, 옥상 배수관 점검 등).
-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경보(태풍으로 인한 강풍.풍랑.호우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6시간의 강우량이 11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필요시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한다.
  - 교사들에게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의 재교육 실시를 지시한다.
  - 학생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활동 등)을 검토.조정한다.
  - 토석류 붕괴, 산사태 등 학교 내 위험지역 접근을 막는다.
  - 등.하교시 위험상황(침수, 통학로 소실 등)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 피해 발생시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나) 교사/직원

- 태풍.집중호우 주의 또는 경보 발령시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시설은 출입을 금지한다.
  -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하지 않는다(익사위험).
  - 벼락이 치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가급적 혼자서 다니지 말고 친구, 선배 등과 함께 동행한다.
  -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해야 한다.
  - 호우로 걷기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한 건물로 피한다.
  - 학교 내 붕괴우려지역(공사장 주변, 옹벽, 경사지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 출입문을 꼭 닫는다.
•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께 알리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다) 시설관리자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시설물의 침수, 파손, 붕괴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들을 실행한다.

10 한파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업무 추진계획 알림」(재난예방과-6890(2017.11.02.)호)
❍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2017.02.)

(2) 개념

❍ 한파: 저온의 한랭기단이 몰아닥쳐 기온의 급격한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

구분	발령 기준(발령기관 : 기상청)
한파주의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단계별업무처리절차

구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각급학교
평시 (겨울철)	.기상상황 모니터링	.기상상황 모니터링	.기상상황 모니터링 .한파 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 (동상, 저체온증, 낙상 등 예방) .비상연락망 점검 및 정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한파 주의보	.기상상황 모니터링 .상황전파 및 대응조치 안내 .대응상황 모니터링 .비상근무(필요시)	.기상상황 모니터링 .상황전파 및 대응조치 안내 .대응상황 확인 .비상근무(필요시)	.기상상황 모니터링 .등·하교시간 조정 검토 .실외수업 자제 .한파 대비 학생 행동요령 실천 .실내 적정온도 유지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한파 경보	.기상상황 모니터링 .상황전파 및 대응조치 안내 .대응상황 모니터링 .비상대책반 운영(필요시)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 후 학교 통보 (단, 광범위한 지역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시)	.기상상황 모니터링 .상황전파 및 대응조치 안내 .대응상황 확인 .비상대책반 운영(필요시)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 후 학교 통보 (단, 관할 지역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시)	.기상상황 모니터링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 조치 검토 및 보고* (조치시 학생·학부모 안내 철저) .실외수업 금지 .한파 대비 학생 행동요령 실천 .실내 적정온도 유지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학교진입로 등 결빙구간, 동파방지, 전열기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 등) .피해발생시 응급조치, 복구 및 보고

*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등 조치 검토는 학교 실정(여건)을 감안한 학교장 재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긴급 상황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결정 가능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동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등)]

아) 복구 활동

(1) 재난사고 발생 시 심리적 치료 체계 구축

<사전 조치사항>

• 학교는 학교 내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각 역할을 분담한다.
  - 구성 시 학교 내·외 전문가를 위기대응팀에 구성하고 재난대응계획의 수립·실행·평가를 한다.
• 학교장은 위기대응팀 구성원들이 담당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학생 자살 또는 학교구성원들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 후 신체적·정신적 징후에 대한 연수나 홍보를 실시하여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재난위기 발생 시 정신적·심리적 자기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계획·실시한다.

<사후 조치사항>

• 학교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1차 위기대응 관계자(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 장소는 학교로 하며, 사건에 대한 공지와 학부모 공지 수준, 이후 진행될 위기 대응 일정조율, 시간 계획과 각 담당별 업무분담에 대해 논의한다.
• 확인된 사실만을 교사 → 학생 → 학부모 → (필요한 경우) 언론의 순서로 공지한다.
  - 공지하는 범위는 유가족과 사전 협의를 하며, 학생에게 공지할 경우 담임이 반별로 공지하는 것을 권장한다(전체 방송안내 지양).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서면과 휴대전화 문자를 함께 이용한다(서면 안내문이 유실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 고려).
  - 언론공지는 반드시 지정된 언론담당자(주로 교감)로 일원화하여 공지한다.
• 교사 연수는 학교내·외부의 전문가가 실시하며, 전체교사(또는 각 학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 내용에 교사 자신 돌보기를 포함한다.
• 학생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리검사나 교직원과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 심리지원을 한다.
• 학교 내에 위기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 심리적 위기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 추후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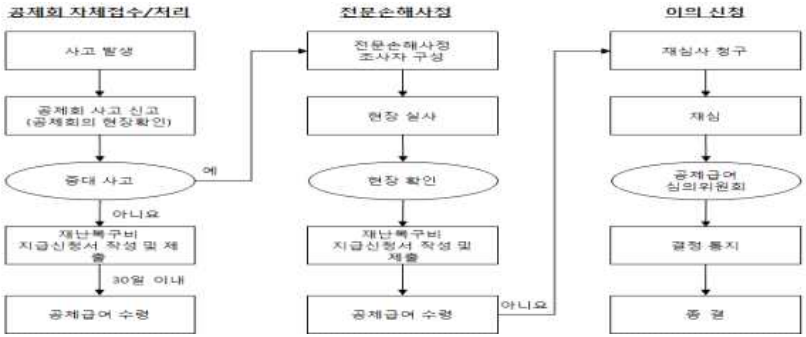
(2) 시설 복구

교육시설이 화재, 풍해, 수해, 한파 및 설해로 인한 피해 및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공제신청을 한다.

(가) 대상 : 학교건물, 취득단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 도서, 건물의 부속물
(급수대, 휀스, 조회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나) 보상책임기간 : 차년도 1월1일 0시~12월31일 24시까지(1년간)

(다) 신청방법: 학교장->교육장->교육시설재난공제회



(3) 학교안전공제회

(가)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구분	당연가입
대 상	- 우리학교 학생(병설유치원 포함)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가입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나) 공제급여 지급 대상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는 학교가 설치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확인 후 처리

사고발생
↓
신속한 구호활동 … ■ 119신고 ■ 현장 응급처치 및 보건실.인근병원 후송 ■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가급적 학교관계자가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사고 발생 일시, 사고 관련자 등) ■ 사고 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기록

사고통지 (학교)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7일 이내) 사고통지 (학교에서만 가능)
↓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교사용자(또는 학부모사용자)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 후 구비서류 우편(등기) 발송
※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약제비 청구 시 처방전 포함)
- 청구인 통장사본
-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 (비급여 진료비 발생시)
- 진단서 (50만원 초과 청구 시)
- 추민등록등(초)본 (50만원 초과 청구 시)
↓

공제급여지급 (공제회) … ■ 공제 접수 14일 이내 처리 완료 ■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내역 공문 통지

2.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계획

1) 교과 연계 안전교육

지도 영역	교육시수	교과		창체		지도내용	반영시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생활안전교육	연간 12시간	1	1	5	5	실종유괴예방교육	3개월에1회이상(연간 10시간이상) <7대안전교육 연계>
교통안전교육	연간 11시간	3	3	3	3	교통안전교육	2개월마다1회 이상(연간10시간이상)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연간 8시간	2	2	3	3	가정폭력예방	연간1시간이상
						학교폭력예방	학기당 2시간이상(학생)학기당 1회 (학부모 및 교직원)
						아동학대예방	6개월에1회 이상(연간8시간이상)
						생명존중	학기당1회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연간 10시간	4	4	1	1	감염병 및 음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인터넷중독예방	연간1회 이상
재난안전교육	연간 6시간	2		2	2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6시간이상)
직업안전교육	연간 2시간	1	1			보건교육(1개 학년이상)	연간17시간 이상 <대상:6학년>
응급처치교육	연간 2시간	1	1			성교육	연간20시간이상(성폭력예방교육 4시간 포함) <보건교육, 7대안전교육과 연계>
장애인식교육	연간 1시간이상	1	1			영양·식생활교육	연간2시간이상 <교육과정과 연계>
						교원 인성교육	연간 4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	연간 4시간	2	2			반영시수 (안전)표기는 7대 안전교육과 연계 가능	

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안전교육

○ 교과 연계를 중심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날짜	학년	시수	활동내용	날짜	학년	시수	활동내용
3.6	전학년	1	학교폭력예방교육	6.26	전학년	1	흡연예방교육
3.16	전학년	1	성폭력예방교육	9.4	전학년	1	학교폭력예방교육
4.6	전학년	1	인터넷윤리교육				

3) 외부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교육

○ 교과 연계를 중심으로 각 학년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2020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2020년 이수예정)

구분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A)×100
인원	12	11	23	8	7	15	66%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020년 이수예정)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81	12	11	23	87	12	11	23	100	100

다. 재난대피훈련 연간계획

1) 재난대비 훈련 연간계획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토론기반훈련	모든 교직원	안전부장	
4월	황사·미세먼지 훈련	토론기반훈련	모든 교직원	보건교사	
4월	합동소방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행정실장	소방서 합동
5월	을지태극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행정실장 안전부장	
6월	지진대피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9월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대응 훈련	토론기반훈련	체험학습 지도교사	체험학습 담당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포함)	워크숍 및 현장훈련 등	모든 교직원과 학생	행정실장 안전부장	
11월	지진대피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행정실장	
11월	심폐소생술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	보건교사	CPR
12월	실험·실습안전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전담교사	

3. 학교 시설 안전 점검·관리·조치

가. 학교 시설 안전 점검

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 관련 점검표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1. 교실/특별교실

위치 : 학년 반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금감/깨짐*	○	*△/ 청소불량*	*×,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교실 바닥	▪ 1)교실 바닥의 안전상태(바닥균열/마감재 탈락 및 노후화, 보행장애물 여부)			
2. 교실벽	▪ 1)벽체 안전상태(균열 및 기울임 여부)			
	▪ 2)벽체부착물의 안전상태(칠판,게시판,선풍기 등의 고정상태)			
	▪ 3)콘센트의 안전상태(먼지/탄자국, 고정불량, 문어발식 사용여부)			
3. 교실문	▪ 1)출입문 안전상태(레일,손끼임 방지, 부착물 등 상태)			
4. 교실 창호	▪ 1)창호 안전상태(유리,추락방지 보호시설의 고정상태)			
5. 천장	▪ 1)천장의 마감재 안전상태(처짐,파손,누수흔적 등 상태)			
	▪ 2)천장 부착물 안전상태(전등, 선풍기, 냉방설비, 빔프로젝트 고정 상태)			
6. 기타	▪ 1)책걸상 관리상태(파손, 동작 등)			
기타사항:				

※ 교무실, 행정실, 체육관, 기숙사 등은 위 서식을 준용

2. 공용공간 (현관/계단/화장실/옥상/외벽)

위치 : (예시) 본관동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금감/깨짐*	○	*△/ 청소불량*	*×,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현관	▪ 1)현관 출입문 상태(손끼임방지, 시건장치, 문짝의 고정)			
2. 계단	▪ 1)계단 미끄럼방지 장치(논슬립) 탈락상태			
	▪ 2)난간의 고정 상태			
3. 화장실	▪ 1)내부 칸막이 고정/파손 상태			
	▪ 2)타일 탈락 상태			
	▪ 3)위생기구 상태(파손, 동작 등)			
4. 옥상	▪ 1)옥상 출입문 상태			
	▪ 2)옥상 난간대 고정 상태			
	▪ 3)옥상 바닥 및 배수로(물받이)의 퇴적물 청소 상태			
5. 외벽	▪ 1)선홈통 안전상태(부착상태 및 청소여부)			
	▪ 2)간판,전광판 등 부착상태			

기타사항:

3. 외부공간 (운동장/담장/기타)

위치 : (예시) 운동장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금감/깨짐*	○	*△/ 청소불량*	*×,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운동장	▪ 1)운동장 전반 평활 상태(패임, 장애물, 트랙 주변 단차이 메꾸기)			
	▪ 2)운동장 배수로 안전상태(파손, 패임, 퇴적물의 청소상태)			
2. 담장	▪ 1)옹벽, 석축, 교문, 담장의 이상 유무(균열, 처짐, 기울어짐 등)			
3. 기타	▪ 1)CCTV안전상태(파손, 고정, 작동상태)			
	▪ 2)맨홀 뚜껑 탈락, 파손여부			
	▪ 3)의자, 가로등, 표지판, 식수대 고장 또는 파손			

기타사항:

4. 소방/전기/승강기

위치 : (예시) 본관동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ㅡ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금감/깨짐*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소방 분야	▪ 1)소화 및 감지설비 안전상태(소화기,소화전,수신반,감지기 동작 등 상태)			
	▪ 2)피난 및 방화설비 안전상태(피난구,유도표시 및 방화문 동작, 장애물 등 상태)			
	▪ 3)소방점검 용역업체 점검상태(전월의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 4)소방차 진입로 상태(장애물 존재 등)			
2. 전기 분야	▪ 1)조명설비 안전상태(체육관 포함, 동작·파손·고정 등)			
	▪ 2)전열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여부 및 문어발식 사용, 개인전열기 사용 등)			
	▪ 3)관리실의 안전상태(전기실, EPS실, 경고표시-위험 및 접근금지 상태여부)			
	▪ 4)전기점검 용역업체 점검상태(전월의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3. 승강기	▪ 1)승강기 등 안전상태(승강기,덤웨이터,비상통화장치 등 동작/파손 등 상태)			
	▪ 2)정기점검 용역업체 점검상태(전원의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기타사항:				

5. 기계/가스

위치 : (예시) 본관동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ㅡ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금감/깨짐*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기계 설비	▪ 1)냉난방설비 안전상태(실내기/실외기 동작/파손/부식 등)			
	▪ 2)급수 및 급탕설비 안전상태(펌프,보일러,세면기 등의 동작/파손/부식/누수 등)			
	▪ 3)환기설비 안전상태(팬,덕트,환풍기 등의 동작/파손/부식 등)			
	▪ 4)관리실의 안전상태(기계실,보일러실,PS실,경고표시-위험 및 접근금지 등)			
2. 가스 시설	▪ 1)가스설비 안전상태(용기,배관,경보 및 차단설비 등 동작/파손/부식 등)			
	▪ 2)관리실의 안전상태(가스보관실,배관분기장소,경고표시-위험 및 접근금지 등)			
	▪ 3)가스설비 정기점검 상태			
기타사항:				

6. 통학로/통학버스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금감/깨짐*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통학로	▪ 1)교내 차량 통행로 및 통학로 안전상태(인도와 차도 구분, 도로파손, 보행장애물 상태)			
	▪ 2)학교앞 통학로/도로 안전상태(보행장애물, 도로/보도블록/과속방지턱 상태)			
	▪ 3)학교앞 교통시설물 안전상태(교통표지판 시야확보,볼록거울,안전휀스 상태)			
2. 통학버스	▪ 1)어린이통학버스 등록차량여부 및 차량 앞유리에 통학버스 신고필증 부착 상태			
	▪ 2)차내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또는 안전시트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상태			
	▪ 3)광각 후사경 설치유무(의무사항) 및 고정상태			
	▪ 4)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불필요한 물건의 존치 상태			
	▪ 5)정기적 차량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상태, 안전수칙 부착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기타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1. 어린이놀이시설 (초등학교)	▪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점검/사고보고서/결과대장 관리여부	※ 기 사용중인 양식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 (참조: 학생생활안전과-621(2016.1.22.) 20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 2)부적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및 수리이력 관리대장 작성여부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2. 체육시설	▪ 1)체육시설의 근본적 낙후/파손상태			
	▪ 2)체육시설의 금이 가거나 깨진부위 존재			
	▪ 3)금속재질 체육시설의 녹발생, 페인트칠 벗겨짐 여부			
	▪ 4)체육시설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이험물질 존재			

기타사항:

8. 급식실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 일일 위생안전 점검표, 주간 청소점검표 작성 및 게시여부

※ 기 사용중인 양식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



학교급식 위생.안전 1일 점검표

2017년 월 일 요일 날씨 : 점검시간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불량시 조치사항)
가스	1.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는가?	양호 ○	불량	* 2번은 주 1회 점검
	2. 배관 호스의 연결부 비눗물 점검결과 누출된 곳은 없는가	양호 ○	불량	
	3. 작업이 끝난 후 각각의 기기의 가스밸브와 중앙 밸브는 적절갔는가?	양호 ○	불량	
	4. 가스경보기의 작동상태는 어떠한가?	양호 ○	불량	
전기	5. 전기배전판의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양호 ○	불량	
	6. 환풍기 작동상태는 어떠한가?	양호 ○	불량	
	7. 작업이 끝난 후 전체 전원스위치를 OFF 시키고 모든기기의 전원플러그를 모두 빼었는가?	양호 ○	불량	
창재 예방	8. 소화기는 제자리에, 눈에 띄게 놓여졌는가?(위치표시 여부)	양호 ○	불량	* 주1회 소화기 내용물이 굳지 않도록 관리
	9. 소화기 충전상태(충전표시눈금 확인)	양호 ○	불량	
안 전	10. 문단속, 점검결과?	양호 ○	불량	
	11. 전기 및 가동되는 기기는 없는가?	양호 ○	불량	
식품 창고	12. 식품창고의 정리 및 청소 상태는?	양호 ○	불량	* 부식창고 청소는 1일 1회 실시
	13. 식품창고의 환기 실시 여부?	양호 ○	불량	
화장실 휴게실	14. 화장실내 수건,비누,화장지, 휴지통 준비 및 관리상태는?	양호 ○	불량	
	15. 화장실(사워실) 정리상태 및 청소 상태?	양호 ○	불량	
	16. 휴게실 정리 및 청소 상태?	양호 ○	불량	
	17. 위생복 및 개인사물함 관리 상태?	양호 ○	불량	
냉장고 냉동고	18. 냉장고 보관 식품명 : 1) 반찬냉장고			
	2) 채소냉장고			
	3) 계란냉장고			
	4) 떡어류냉장고			
	19. 냉동고 보관 식품명			
위생 관리	20. 조리실 바닥은 청결히			
	21. 위생화 세척 및 정리			
	22. 배수구 청소 상태는?			
	23. 조리대 및 선반 물기 제			
	24. 청소기구(빗자루,대포			
기타	25. 배기후드의 환풍기의			
	26. 조리기계,기구 중 수리			

청 소 점 검 표

점검기간 : 20 . . . ~ . . .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인)

구 분			담당자	26 월	27 화	28 수	29 목	30 금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매일	급식 조리 기구	조리기계(취사기, 국솥 등)									
		조리대(검수대, 작업대, 세정대등)									
		식판, 국그릇,수저, 컵,도마, 칼, 기타 집기류									
	청소세척 도구, 위생복	행주, 고무장갑, 수세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등									
	급식실 내부	바닥									
	하수구, 트랜치	하수구(배수구), 트랜치									
	식품창고	식품창고 악물질 제거									
주별	월	가스실 / 급식소주변									
	화	식당 식탁 및 의자 닦기									
	수	유리창청소(1,3주)/ 외부그림스트랩(2,4주)									
	목	냉장고(조리실,워크인,우유보관용)									
	금	벽,배기후드(1,3주)/ 조리실 대청소(2,4주)									
월 별		식품창소 대청소									
		벽									
		가스배관 및 밸브(이상여부확인)									
		천장									
		각종게시물(액자,거울,시계,온습도계)									
연간		*개학 및 방학대비 대청소(연4회) *에어컨 점검 및 필터청소(하절기)							* 위생관련 시설, 설비, 기기 점검 보수(방학중) * 방역소독(연6회이상)		

* 청소시 유의 사항 : 전열기구의 코드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려 감전사고에 유의한다.
음식물의 청소 오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조치 후 청소한다.

9.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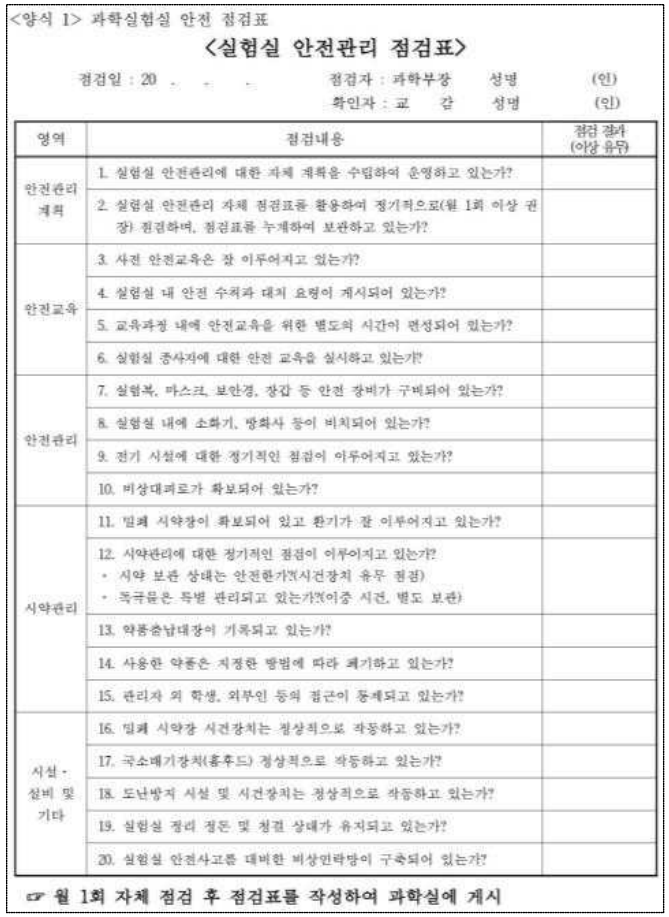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 월1회 작성 및 게시여부

※ 기 사용중인 양식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



<양식 1>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표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일 : 20 . . . 점검자 : 과학부장 성명 (인)

확인자 : 교 감 성명 (인)

영역	점검내용	점검 결과 (이상 유무)
안전관리 계획	1.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실험실 안전관리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월 1회 이상 권장) 점검하며, 점검표를 누계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안전교육	3. 사전 안전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실험실 내 안전 수칙과 대처 요령이 게시되어 있는가?	
	5. 교육과정 내에 안전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편성되어 있는가?	
	6.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안전관리	7.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8. 실험실 내에 소화기, 방화사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9. 전기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비상대피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시약관리	11. 밀폐 시약장이 확보되어 있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12. 시약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시약 보관 상태는 안전한가?(시건장치 유무 점검) ◦ 독극물은 특별 관리되고 있는가?(이중 시건, 별도 보관)	
	13. 약품출납대장이 기록되고 있는가?	
	14. 사용한 약품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있는가?	
	15. 관리자 외 학생, 외부인 등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는가?	
시설·설비 및 기타	16. 밀폐 시약장 시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7. 국소배기장치(흄후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8.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9. 실험실 정리 정돈 및 청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20. 실험실 안전사고를 대비한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 월 1회 자체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과학실에 게시

1) 매월 안전 점검의 날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교육청 지침에 따라 매월 안전 점검 실시

2)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 관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나.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0 상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점검 원격연수 및 행정조치 전달연수

○ 2020 하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실시 결과보고 서식

가. 점검 일시 : 2020. . .

나. 학교 자체 개선 사항

	주요내용	투입 예산(천원)
1		
2		
3		
계		

다. 개선 지원 요청 사항: 학교 ⇒ 교육(지원)청

	주요내용	추정 소요예산(천원)
1		
2		
계		

[붙임]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결과표 1부. 끝.

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해당칸에 ✓를 표시

날짜 : 2020년 월 일 점검책임자 : 소속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건축물	**1. 건축물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 등을 설치한다.			
	2. 교실바닥			
	가.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교실벽			
	가.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나.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다.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	◦
	라.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	□	◦
	4. 교실문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 이상으로 한다.	□	□	◦
	2)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	◦
	3)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4)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5)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	□	◦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飛散)이 없도록 한다.	□	□	◦
	2)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한다. 다만,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3)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	□	◦
	4) 여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5. 교실 창호			
	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	□	◦
	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	□	◦
	3) 유리와 창호 간에 이격(離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4) 얇은 유리는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
	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	□	□	◦

	방지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	◦
	6. 특별교실			
	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성(耐化學性)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難燃材料)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
	나.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7. 복도			
	가. 복도와 교실(특별교실을 포함한다) 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실 등의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	□	◦
	나. 복도 벽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	◦
	2) 복도의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3)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	□	◦
	8. 계단			
	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단 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왼쪽 회전 계단 형태로 한다.	□	□	◦
	2) 계단을 갈음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	□	◦
	나. 계단 단 높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챌판(계단 한 단의 수직면을 말한다)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	□	◦
	2) 철골조의 경우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한다.	□	□	◦
	다. 계단 단 너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단 너비는 충분히 확보한다.	□	□	◦
	2)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고르게 한다.	□	□	◦
	라. 계단참의 너비는 최소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마. 계단 난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	□	◦
	2)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	□	◦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한다.	□	□	◦
	4)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cm 이상이 되도록 한다.	□	□	◦

	5) 계단 난간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에는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으로 하고, 수평재인 경우에는 15cm 이하로 한다(난간의 흔들림이 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	◦
	6)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	□	◦
	9. 화장실: 화장실 바닥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다.	□	□	◦
	나. 배수는 항상 잘 되는 구조로 하여 바닥이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	◦
	다. 난방기기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받침대를 만들어 설치한다.	□	□	◦
	10. 그 밖의 사항			
	가.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편 비산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전기 시설	**1. 수변전설비(受變電設備)**			
	가. 수변전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멍이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	□	◦
	3) 습기나 이슬 맺힘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	□	◦
	나. 수변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	◦
	2) 전기실에 위험 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	◦
	2. 분전반: 분전반(分電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
	나. 분전반은 기판(基板)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등에 의하여 조작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	□	□	◦
	다.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	□	◦
	라.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	◦
	3. 전기배선: 전기배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
	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거죽을 씌운다.	□	□	◦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절연저항·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	□	◦
	라.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여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한다.	□	□	◦
	4. 조명설비: 조명설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	□	□	◦

	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한다.			
	나. 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등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	◦
	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	◦
	라.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	□	◦
	마.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한다.	□	□	◦
	5. 전열설비: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敎具)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	□	□	◦
	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300㎜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1,000㎜ 정도로 한다.	□	□	◦
	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	□	◦
	마. 전기 용량이 30 ~ 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	□	◦
설비 시설	**1. 냉난방설비**			
	가.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나. 난방 기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선풍기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	□	◦
	2. 환기시설			
	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실험실 후드 등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실험실 후드나 국소 배기설비의 덕트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라. 실험실 배기설비의 덕트 속도는 배기설비 내에서 물질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빨라야 한다.	□	□	◦
	마. 후드·후드 배기설비·국소 배기설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시험하여야 한다.	□	□	◦
	3. 급배수설비 등			
	가.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다. 급탕(給湯)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정한 급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	◦
	라. 모든 위생 기구는 적당한 수량으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간격과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소방 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나. 감지기는 벽이나 보(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옥내소화전설비 등			
	가.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3. 피난설비			
	가. 유도등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
	나. 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	◦
	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바로 아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럭스(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가스 시설	**1.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한다.	□	□	◦
	나.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火器) 취급을 금지한다.	□	□	◦
	다. 경계 표지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	◦
	라. 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	□	◦
	마. 용기 보관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	◦
	2. 배관: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한다.	□	□	◦
	나.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한다.	□	□	◦
	다.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한다.	□	□	◦
	3. 가스 기기: 가스 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	□	◦
	나.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	□	◦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 조치를 한다.			
	다.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이나 바깥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	◦
	라.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	□	◦
실험실습시설	**1.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화공약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급주의 안전표시를 붙여야 한다.	□	□	◦
	나. 실험실습대와 실험공구는 외관이나 기능이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	◦
	다. 인화성 물질(알코올·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환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소화기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마.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	□	◦
	2. 약품보관설비			
	가.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	□	◦
	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	◦
	다.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3)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철거예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기록 보관 (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법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강기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석면	석면안전 관리법	◦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 ◦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 ◦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 ※ 관리자 신고 후 1년이내 6시간 이상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 ◦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 ◦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 ◦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 ◦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 ◦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 ◦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 ※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 ◦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 ◦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
외부인 출입	초중등교육법	◦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
공사발주	산업안전 보건법	◦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 ◦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
시설사업 촉진	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 ◦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 ◦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 ◦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
하수도	하수도법	◦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 *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

4. 학교안전 문화 확산

가.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협력 체계구축

1) 안전 가치의 최우선적 인식 문화 확산

○ 학교 안전의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제반 교육활동 계획 수립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학교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2)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역할 명료화

○ 학교장은 학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원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 학교안전은 담당 교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원과 직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

나.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1)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작성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 <별첨6>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외부체험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 <별첨5>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 <별첨3>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3. 학교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 (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 <별첨10>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별첨11>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5. 학교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있게 준비하였는가?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6. 기타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2) 3대 진단(위험성 진단, 학교안전풍토 진단, 교원안전역량 진단) 내용의 포함

○ 자가점검표에는 기존의 교육부 연구에 의해 마련.시행 중인 위험성 진단, 학교안전풍토 진단, 교원안전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3대 진단(위험성 진단, 학교안전풍토 진단, 교원안전역량 진단)은 2019년도부터 학교안전자가점검표로 대체

5. 안전사고 피해회복

가. 학교안전 관련 인적·물적 피해보상

1) 학교안전공제

가) 용어의 정의

○ 교육활동의 정의(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교육활동 관련 시간(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교육활동 관련 시간(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나) 학교안전공제 개요

○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며, 시·도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됨

○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 평생교육시설장, 한국학교장은 의무가입자가 되며, 외국인학교장은 임의가입자가 됨

○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됨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입은 피해는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연금 등을 통해 공무상 상해로 보상 처리가 가능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고,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또는 법적 절차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공제료 고시와 결정

구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2020년도	2,530원	4,400원	9,350원	11,550원

다) 공제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항목 치료비 전액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불인정하는 비급여항목 치료비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지급

*선택진료비, MRI, 무통주사제, 화상치료재, 성형수술비, 응급의료 관리료, 물리치료, 치아보철, 재활보조기구 및 통합재활훈련, 진단서 발급 수수료, 외국 체류 중 치료

○ 장해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
- 일실수익(생활비 포함)과 위자료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의 경우 호프만계수가 적용됨에 따라 최대 3~4억원의 보상금이 산정
- 간병급여는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데 주로 장해 1·2급 사고자가 대상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

- 일실수익(생활비 제외)과 위자료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생활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장해급여보다 약 5천만원이 적은 2.5~3.5억원의 보상금이 산정

- 사망 시에는 장례에 소요될 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상응하는 장의비를 별도로 지급

○ 위로금

- 위로금은 심장마비, 돌연사 등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 비용의 보전

-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 필요비 및 유익비, 민.형사소송비용 및 공탁금 등을 지출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담하는 법절차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교단의 안정을 꾀함을 목적

○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 피공제자가 요양기관 지시 불이행 또는 치료를 명백히 방해한 경우, 수급권자가「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부지급

○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

- 요양급여를 제외한 장해.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로서 장해.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 피해학생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

-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대하여 50% 이하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미적용

-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 가능

○ 구상권 행사

-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대법원 2003다13307)

교직원의 중과실 관련 법원 판결례

◦유치원생이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96다19833)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중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가 ……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이며, 또 교사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 머리 부분으로서 …… 더욱이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방법까지 사용하여, 그 결과 학생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장애로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 징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89다카16178)

◦담임교사는 ……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갑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반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담당교사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895)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과학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과학실에 들어가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후 과학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례(청주지방법원 98가합1154 판결)

라)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학교안전법 제44조제2항)

○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학교안전법 제41조제1항)

마) 공제급여의 결정

○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공제급여액을 결정(학교안전법 35조제1항).

- 피해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는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을 연장 가능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금액은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부담(학교안전법 제35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 구상권행사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액(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 법원의 판결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

바)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3심 제도를 두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학교안전법 제57조)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학교안전법 제61조)

○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는 사고 관련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교단의 안정이 침해되고, 불필요한 법적 비용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임

사) 심리치유제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학교안전법 제10조의3)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통지

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대처요령

○ 학교안전사고는 학생들 간의 장난, 게임, 사소한 다툼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

○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라 해도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으며, 경제적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가능

○ 초기 대응이 미숙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팽배하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 발생 가능

○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처리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보건교사 혹은 사고현장 관리교사는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확보하며,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도 기록. 아울러 교사의 직무 수행과 사후조치 내용도 기록

○ 책임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

○ 사고처리에 있어 사고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

○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친권자인 학부모와 직접 협의한다. 학부모 아닌 제3자 개입 시, 사고처리의 본질 왜곡 가능

- 손해사정사가 피해학생을 대신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고 피해보상을 중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학교안전사고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자문 방법

- 시도교육청 법무담당관실에 소속된 변호사 자문

- 학교안전공제중앙회(1688-4900) 또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 문의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각지대공제사업

○ 교육활동 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었음에도 학교안전법에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구분	가입자	보상대상	보상범위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장	교육활동 제3자피해, 휴대폰 도난피해 어린이놀이시설 피해, 급식과태료	대인.대물 1억 과태료500만원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청소년 단체장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1인당 10억 대물 1억
	수련시설장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피해	학생 : 국가배상기준 기타 : 8천만원
한국학교안전공제	한국학교장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피해	요양급여 : 2천만원 장해,유족,간병 : 2억원

3) 물적 피해 복구(교육연구시설공제)

○ 화재, 폭발, 붕괴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학교건물 및 물품의 피해와 이 피해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는 교육연구시설공제를 운영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연구시설의 피해복구와 안전도모를 위해 각급학교 경영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민법(제32조)상 사단법인적 성격의 공익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 및 제5조(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당해 특수건물은 손해보험회사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가입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학교건물 및 교육지원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임

○ 가입주체는 유치원장, 초.중등학교장, 대학총장, 학력인정시설의장임

○ 공제료 산정방식

◦ 건물 : 건물면적 × 단위공제료(원)
◦ 고가건물 : 가입금액 × 적용비율(%)
◦ 폐교건물 : 건물면적 × 단위공제료(원)
◦ 물품 : 물품취득가액(100만원 이상) × 적용비율(%)
◦ 건물 부속물 : 부속물 신설단가 × 적용비율(%)

○ 보상범위

- 건물.물품은 화재(벼락 포함), 폭발, 붕괴 및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를 보상
- 인명손해는 건물의 화재(벼락 포함), 폭발, 붕괴 및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로 인한 신체손해를 보상

○ 보상기준

- 건물.물품은 전손全損인 경우 건물의 현시가와 관계없이 신축단가를 지급하고, 분손分損인 경우 복구 실소요액을 지급
- 인명손해는 부상의 경우 치료실비를 전액 지급하고, 사망.장해의 경우 호프만계수에 의해 산출한 실손해액을 한도 없이 지급

○ 가입종류와 공제기간

- 정기가입은 매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 납부토록 고지한 기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공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추가가입은 가입절차는 정기가입과 같으나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며, 공제기간도 가입신청서 접수일로터 12월 31일까지임.

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

○ 향후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단과 분쟁조정지원단이 구성되고 활동이 개시되면 개별학교에 대해 제도 시행을 통보 예정

○ 학교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

[붙임 1]

학교 비상연락망

순번	직	이름	핸드폰	비고
1	교 장			
2	교 감			
3	교 무			
4	교 사			
5	교 사			
6	교 사			
7	교 사			
8	교 사			
9	교 사			
10	특 수			
11	보 건			
12	유치원			
13	행정실장			
14	주무관			
15	주무관			
16	보육전담			
17	보육전담			
18	사 서			
19	유치원종일반			
20	유치원도우미			
21	급 식			
22	실무사			
23	실무사			
24	특수지도사			
25	야간당직			
26	통학버스 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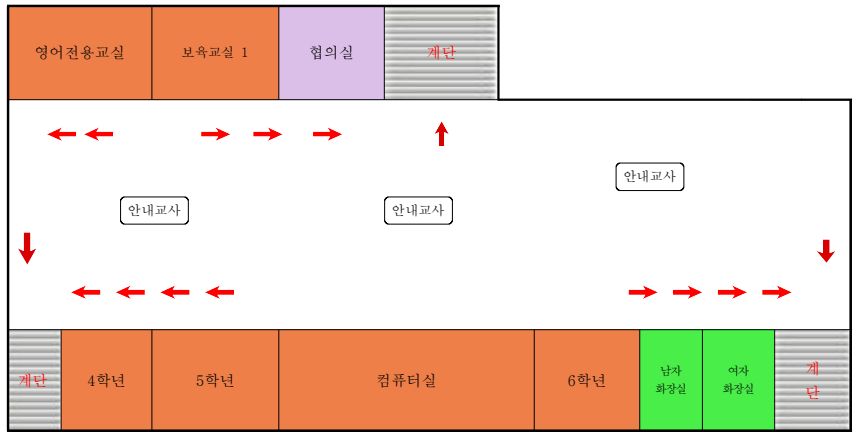
[붙임 2]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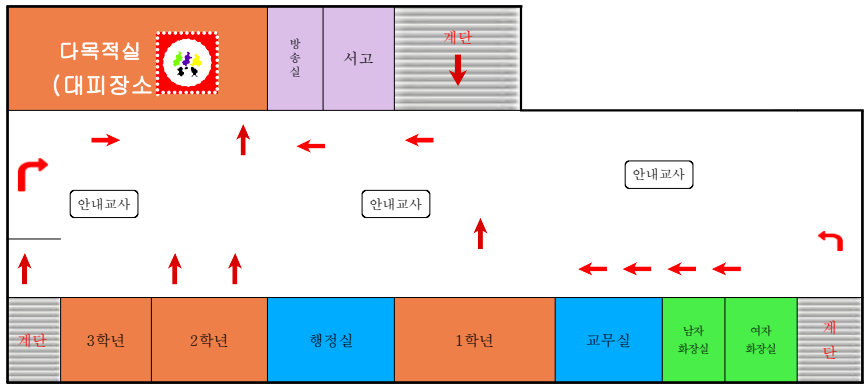


☑ 비상 및 모든 차량 출입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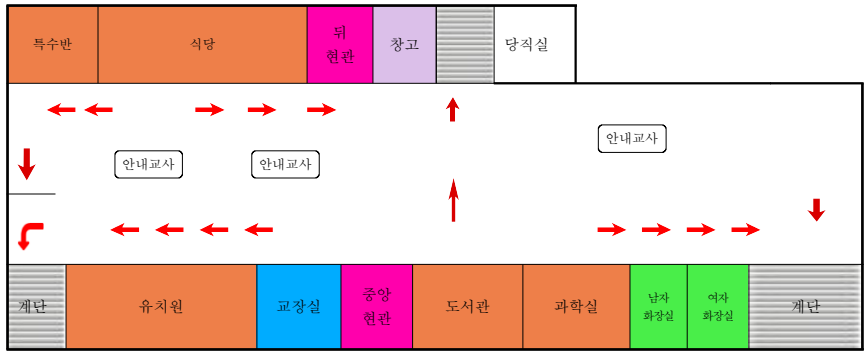
[3층]



[2층]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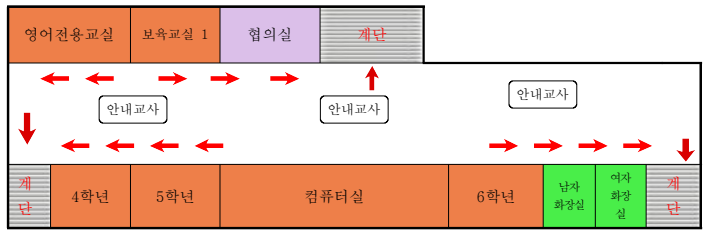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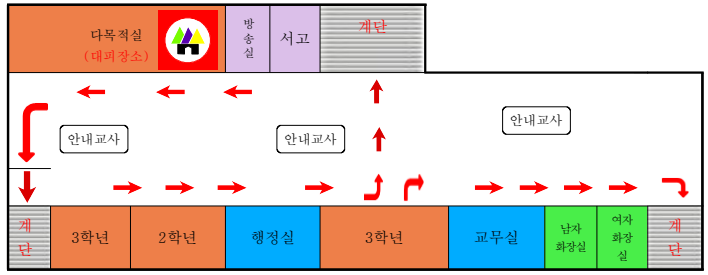
- 대피 장소 : 운동장 우측 놀이터(전학생 및 직원)(관련계획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대피 대상 : 전체 학생 및 전직원
- 각 층별 대피 이동 동선
  ① 1층 : 중앙 현관 및 좌우측 현관 →운동장 우측 놀이터로 대피
  ② 2층 : 중앙 계단 및 좌우측 계단→중앙 및 좌우측 현관→운동장 우측 놀이터로 대피
  ③ 3층 : 중앙 계단 및 좌우측 계단→ 중앙 및 좌우측 현관→운동장 우측 놀이터로 대피
- 대피 시 유의 사항
  ① 안내교사의 지시를 받아 줄을 맞추어 이동한다.(특히 계단에서 질서 유지)
  ② 안내교사는 모든 학생이 대피한 것을 확인 후 대피소로 이동

<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대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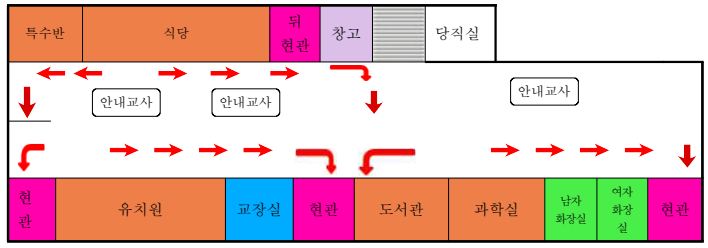
[3층]



[2층]



[1층]



운동장 우측 놀이터(대피장소)

[붙임 3]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 <별첨6>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외부체험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 <별첨5>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 <별첨3>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3. 학교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전년도 실적[2]			추진실적 세부내용[3]
			○	×	○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 (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 <별첨10>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 (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별첨11>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5. 학교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6. 기타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